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PROGRAM BOOK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2024년 2월 19일 13:00-18:00 판교테크노벨리

설명회 | 스타트업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

컨설팅 | 스타트업캠퍼스 2층 2~4호 회의실

2024년 2월 21일 13:00-18:00 창원컨벤션센터

설명회 | 회의실 700호

컨설팅 | 회의실 700호 앞 3개 부스



행사식순

시 간	진 행 내 용	주 관
13:00-13:10	인사말씀(방사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방사청장
13:10-13:20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 표창 수여식	
세션 I. 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13:20-14:30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계약제도발전과
	방산원가 주요정책	원가관리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주요 정책	절충교역과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미래전력사업총괄팀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미래사업전략기획담당관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및 금융지원 정책	방산정책과
14:30-14:45	질의 응답	
14:45-15:10	휴식	
세션 II. 방위력개선 및 국방 R&D사업		
15:10-15:40	'24년 미래본부 방위력개선사업	미래전력사업총괄팀
	'24년 기반본부 방위력개선사업	기반전력사업총괄팀
	국방 R&D사업(핵심기술, 미래도전, 신속시범)	기술혁신과
15:40-16:00	질의 응답	
세션 III.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사업		
16:00~17:40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 국방벤처 / 인큐베이팅 사업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국방기술품질원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수출지원사업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프트웨어 신뢰성분석도구 무상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	
17:40-18:00	질의 응답	
18:00	폐회	



목차

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6
2. 방산원가 주요정책	20
3.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주요 정책	28
4.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32
5.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42
6.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52
7.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및 금융지원 정책	64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사업

1.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74
2. 방위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82
3. 수출지원 사업	108
4. 소프트웨어 신뢰성분석도구 무상 지원사업	118
5.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사업	122

* 방위력개선 및 국방 R&D사업 발표자료는 본 책자에 포함하지 않음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2. 방산원가 주요정책
3.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주요 정책
4.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5.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6.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7.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및 금융지원 정책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I.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추진 배경

- 現국가계약법은 방산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도한 지체상금 및 방산계약 분쟁의 지속 발생으로 업체의 개발의욕 저해
-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계약체계 혁신을 통해 도전적 국방R&D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안보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 필요
-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

추진 경과

- 법률 개정안 국방위 전체회의 심사 의결 : '23. 8. 25.
- 법사위 심사 의결 / 국회 본회의 의결 : '23. 9. 21. / 10. 6.
-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마련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 ~ '23. 9월
-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업체 설명회(판교, 창원 대전, 구미 등) : '23. 7월, 9월, 10월, 11월
-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국방부 송부 : '23. 11월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3조(정의) 1.“방위사업계약”의 대상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시행령 개정안 제2조의3(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

1. 전시, 사변,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경계태세의 강화 시 필요한 군수품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피해 복구 또는 예방에 필요한 군수품
3. 국가적 차원의 재해, 재난 및 감염병 등에 대비·대응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소요되는 군수품
4.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달이 필요한 군수품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3조(정의) 1.“방위사업계약”의 대상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시행령 개정안 제2조의4(장병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군수품)

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어 성능 중심의 평가가 필요한 전력지원체계를 말한다.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시행령 개정안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⑧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방위사업추진 관련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2. 사업추진 관련 **연구보고서**에 관한 정보
3. 위원회·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4.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되는 **주요한 연구성과물**에 관한 정보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46조(계약의 특례)

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개정안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③ 법 제46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긴급하게 조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해외정비를 하고 있거나, 국내·외 수리원이 소멸된 장비 및 구성품, 결합체에 대한 정비능력을 갖춘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국내업체와 정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가 복수이고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I.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46조(계약의 특례)

- ① 정부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3(장기계약)

- ① 법 제3조 제16호에 따른 장기계약은 계약이행에 수년이 요구되어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 ② 장기계약에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 ③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용역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을 계약서에 부기하고 연차별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확정하여, 계약이행 기간 동안 계약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I.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① ~ (생략) ~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4(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 ①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각각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이하“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의4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계법」제27조 및 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국계법」제27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46조(계약의 특례)

-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5(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소요군이 제2조의4의 군수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조달을 요구한 소요군과 협의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소요군이 제2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I.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46조(계약의 특례)

- 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6(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기준)

-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 구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할 때 필요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 ③ 그 밖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46조(계약의 특례)

-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8(국내산 물품의 우선 획득)

-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등에 국내산 물품 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에게 외국산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등의 사용 방지 대책, 보안대책, 또는 취급·관리 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 등에 이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9(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기준 및 방법 등)

- ⑤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시행규칙 개정안 제37조의2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한도)

영 제61조의9제6항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영 제61조의9제2항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총 합계액 - 기 지급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 의 100분의 100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 (영 제61조의9제2항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총 합계액 - 기 지급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 의 100분의50
3.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영 제61조의9제2항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총 합계액 - 기 지급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 의 100분의30

1.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46조의3(인센티브 부여 등)

-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10(핵심기술 등의 적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시 핵심기술등의 활용도 등을 평가기준 및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안서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I.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46조의4(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11(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 ② 다음 각 호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양산의 경우 방산물자에 한정한다)
 2.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약
* (현행) 최초양산 → (변경) 방산물자인 양산 전체(최초양산+후속양산)로 확대
- ⑤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적 차원의 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등
 2. 정부의 시책, 규격변경, 전산장애, 행정 지연 등 정부의
 3. 주요 원자재 또는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등 원자재 또는 부품의 수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I.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11(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 ⑥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생략)~~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은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감면 또는 면제사유와 관련하여 계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상금 최종 결정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⑧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 및 제3호다목(가혹한 시험조건에 의한 지체)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고도의 기술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여부(이하 ‘성실이행’이라 한다)와 가혹한 시험조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관은 지체상금 최종 결정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⑨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8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 (생략) ~~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I.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계약이행 도전성 평가표 / 성실성평가표 / 가혹한 시험조건 평가표 / 심의기준표

가혹한 시험조건에 대한 평가표(안)

구분	세부 평가 항목
①	국내 무기체계의 성능이 국외 유사성에 성능 미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에 해당하는 시험평가 기준이 중회, 중상회, 시험평가 기준 보다 높게 설정 되어 해당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②	최초 계획된 시험평가기간 중대한 결함 발생으로 시험평가가 중단 되어 시험평가를 재수행할 경우 시험실, 시험시설 확보, 관련된 시험환경 구상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③	* Eq (시험주요부 사용기간 연장,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연동대상체계 확보, 소모품 시험능력 지원, 공역 및 등 ** 재시험의 횟수는 무관하게 일정에 보완 후 재시험이 가능한 날에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조성된 경우는 제외
④	최초 계획된 시험평가기간 발생한 결함 등으로 인해 시험평가가 불충분 하여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거나 시험실, 시험시설 확보, 관련된 시험 환경, 구상, 등의 문제 로 보류기간 외 기간이 연장되거나 불가피하게 시험평가를 재수행함으로써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⑤	* "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평가 기간을 연장 또는 재수행할 경우 개발시험평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 함으로써 연장되었는지 여부
⑥	최초 계획된 시험평가 항목 외 시험평가 수행한 형상치, 치차치, 식별된 불특정이나 승차로, 소모품 시험평가 항목 등으로 인해 미흡 추가 수검 보완 등 시험함으로써 인해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⑦	시험평가 환경조건이 국내에서 충족할 수 없어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로 국외에서의 환경조건 또는 국외의 제반 시설연결이 계획된 일정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 되었는지 여부
⑧	그 밖에 가혹한 시험조건이라고 설명의필요사항위원회에서 제안 하는 경우

- 고도의 기술수준에 따라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어 지체된 경우는 가혹한 시험조건에 따른 평가가 아닌 본 제46조의4(시험평가)에 준하여 평가한다.
- 각 항목별 지체일수를 산정하고, 다수의 것이 충족될 경우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고" 중 "고"와 "중"의 지체일 수를 합산하고, "중"과 "중"의 지체일 수를 합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 제46조의4에 해당할 경우 통합시험평가기간 또는 성실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체일수로 환산한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표(안)

구분	면제 및 감면 기준표
계약 이행 성실도	정수 70점 이상~80점 미만 80점 이상~90점 미만 90점 이상~100점 미만 100점 기준 감면율 40% 60% 80% 면제 부과율 60% 80% 20% 0%
위원회 평가	위원회는 계약이행성실도 점수에 따른 기준 감면율을 기초로 기동원의 계약이행 도전성/성실도에 대한 추가 평가, 계약금액, 사업의 중요성 등 그 외 정제적 요소를 추가 평가하여 ± 10%내에서 감면율 추가 조정 가능
후속단계 진행 여부	후속단계 추진 여부에 따라 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한 부과율에 50%를 추가 감면
예시	전체 지체일수 120일, 지체사유(① 무기체계의 핵심 구성품 중 국외에서 도입되어 운용 중인 타업체를 국내 연구개발로 국산화하는 것으로 제약되었으나 이로 인해 제46조의4(가)에 해당한 사유는 70일 지체, ② 설계가 제46조의4(가)에 해당한 사유는 50일 지체, ③ 설계가 제46조의4(가)에 지체의 직접적 원인은 아닌 경우로 후속단계 전담(지체60일 인정), 계약이행성실도 85점 획득, 위원회 평가 5% 추가 감면, 양산 전환 기준감면율 60% = 위원회 감면율 5% + 부과율 35% = 50% = 감면율 82.5% // 감면금액 = 감면율 82.5% × 70일 지체상금

<위원회 심의사항>

- 지체상금 관련 "기동원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결과의 적절성",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기준" 심의
- 계약변경 관련 "본과위 등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또는 주요 운용성능 변경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여부", "기동원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결과의 적절성", "계약변경사항(기간, 운용성능 등)에 대한 적절성" 심의

I.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법 개정안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국제법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의 성실한 이행
- 그 밖에 불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12(계약의 변경 등)

- ① 법 제46조의5에 따라 계약관이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5제2호(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 개발)의 사유에 따른 계약변경 시에는 계약관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 영 제61조의11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 시험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 후 계약완료일 전까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조제15호가목의 방위사업계약과 관련하여 시험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업계속 추진 여부 결정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12(계약의 변경 등)

-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정된 공정을 예정된 일자에 실시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방위사업계약상대자 및 소요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에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된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시점에는 일반물자였으나 계약기간 중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2. 계약체결시점에는 방산물자였으나 계약기간 중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 개정안 제59조(입찰참가자격제한)

-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 제70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알선·청탁은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중개하거나 부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I. 달라지는 계약제도 안내

향후 추진 계획

-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24. 2월 3주~ 3월 4주
-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 : '24. 4월 중
-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시행 : '24. 5. 1.(수)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2. 방산원가 주요정책





방산원가 주요정책

II. 방산원가 주요정책

목 차

- ☑ 방산원가 구조개선 ('23년 시행 : 이윤구조 단순화, 방산노임단가 등)
- ☑ 방산원가 규정개정 ('24년 시행예정 : 방위사업계약 추진)
- ☑ 방산원가 구조개선 ('25년 시행예정 : 4차산업 기술발전 원가구조)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구조개선('23년 시행)

방산원가 구조개선('23년 시행) 주요내용

- ☒ 방산원가구조 분석 및 보완을 통해 방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및 R&D 확대, 부품 국산화 등 정부 정책목표 달성 추진

① 방산노임단가 시행

② 기준노무량 시행

③ 이윤구조 단순화 및 이윤율 확대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구조개선('23년 시행)

1 방산노임단가 시행

☒ 방산노임단가 산정

- 그룹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안정화를 위해 업체별 노임단가 적용
- 공장을 구분하여 방산재비율을 산정하는 업체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장별 노임단가 산정

☒ 합리적 임금 인상을 적용

- 업체들의 무분별한 임금 인상을 방지하고 민간의 임금 인상률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경총 제시율→ 고용노동부 고시율(제조업 평균)과 업체 인상률의 평균 적용(각 3개년)

* 現 「하도급업체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과 기준 통일

2 기준노무량 시행

☒ 기준노무량 산정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 자료관리 및 업무 전문성 축적을 위해 기준노무량 산정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근거 마련
- 최초양산 사업부터 적용하되 기준노무량 산정업무를 통한 결과물 축적, 원가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확대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구조개선('23년 시행)

3 이윤구조 단순화 및 이윤율 확대

이윤구조 단순화: 12개 항목 → 7개 항목

[구기준]

이윤	기본보상	
	위험보상	기술위험보상
		계약위험보상
	노력보상	설비투자노력
		연구개발노력
		수출확대노력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
		계약수행노력
		원가절감노력
		품질일관성노력
		생산성경영노력
		원가부정 이윤차감
	투자자본보상비	

[현기준]

이윤	기본보상	방산경영안정 보상
		위험보상
		투자자본보상
	노력보상	연구개발노력
		수출확대노력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
		중소기업육상보상(신설)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구조개선('23년 시행)

3 이윤구조 단순화 및 이윤율 확대

이윤율 확대

- 기본보상을 상향으로 방산업체 경영안정 강화
 - 방산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보상 조정계수 상향 : 0.25% → 0.65%
-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 이윤 개선
 - 수출 및 연구개발 이윤 상한 추가 확대 : 4.5% → 6%
- 중소기업 외주가공 및 부품국산화 확대
 - 중소 외주가공 이윤 4% → 10% 적용, 부품국산화 이윤 10% 신규 적용
- 방산원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윤 보상
 - 방산원가 투명성 제고, 원가·비용분석 분야에 대한 AI 활용 등 정책방향성 유지를 위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이윤 보상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규정개정

방산원가 규정개정('24년 시행예정) 주요내용

- ☑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체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에 따라 「방산원가규칙」, 「방산원가시행규칙」 등 방산원가 관련 하위규정 개정 추진

- ① 계약특례대상 확대에 따른 방산원가대상물자 인정범위 확대
- ② 방위사업계약으로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결정절차 일원화
- ③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규정개정

1 계약특례대상 확대에 따른 방산원가대상물자 인정범위 확대

- ☑ 방산물자, 국방연구개발 연구 또는 시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방산원가를 적용
- ☑ 확대된 방위사업계약 대상에 대해서는 필수 수리부속 및 하도급 원가규정 적용 추진

방위사업계약 (방위사업법)		원가대상(방산원가규칙)	원가계산기준
방산물자		방산물자	방산원가시행세칙 방산원가+방산이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연구 또는 시제품	연구 또는 시제품	
	양산	추가	필수수리부속 및 하도급 원가규정 * 방산업체 : 방산원가+9%이윤 * 일반업체 : 실발생원가+9%이윤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	추가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용역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용역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추가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규정개정	
2 개산계약의 가격결정절차 일원화	
☒ 방위사업계약 개산계약 체결 건의 신속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개산원가는 견적가격을 우선 적용, 불가능시 원가계산가격을 적용	
현 행 제27조(개산원가의 계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개산원가 계산서와 견적서 등 필요한 원가자료를 검토한 후 개산원가를 계산한다.	개 정 안 제27조(개산원가의 계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개산원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61조의 5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견적가격 2. 유사장비 또는 물품 등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가격
3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방산제조원가 이윤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 방산용역수행 업체의 실질적 이윤보상 제한 해소	
현 행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②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 정 안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②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구조개선('25년 시행예정)	
방산원가 구조개선('25년 시행예정) 주요내용	
☒ 기술발전추세 및 산업구조 전환 등의 제조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추진	
①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선순환 원가구조 재설계	
② 국방 S/W 개발 촉진을 위한 적정가치 평가기준 마련	
③ 빅데이터화를 통한 비용분석-원가산정 신뢰성 제고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구조개선('25년 시행예정)

1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선순환 원가구조 재설계

☑ 현실태/문제점

- 방산원가는 직접노무비 중심의 원가구조로서 직접노무비에 대해 각종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로서, 인력이 투입 되던 공정을 자동화하면 직접노무비가 감소하고, 이에 연동된 제조원가 및 이윤까지 동시에 감소
- 방산분야는 발생원가에 비례하여 이윤 보상하는 구조로서 자동화설비 도입 시 감가상각비, 투자자본보상비 등 실제 발생비용 수준에서만 보상하면 매출 및 이윤이 감소하면 시설투자비 회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4차산업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유인이 없음.

☑ 개선방향

- 산업구조별 특성(자동화 공정 등)을 고려한 원가산정기준 마련

~을	~으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직접재료비 × 간접노무비율

- 초기 원가절감액 업체 귀속 및 투자비용 조기회수방안을 통한 유인책 제공
* 원가절감보상계약 확대방안 마련, 4차 산업 설비에 대한 한시적 내용연수 단축을 통한 비용 조기회수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구조개선('25년 시행예정)

2 국방 S/W 개발 촉진을 위한 적정가치 평가기준 마련

☑ 현실태/문제점

- 해외 S/W는 라이선스 등 가격을 지불하지만 국내 개발 S/W는 개발비용만 지급하고 있으며, S/W알고리즘 개념설계 등에 대한 가치 미반영으로 국내S/W개발환경 활성화 필요
- 업체자체 개발 S/W에 대해서도 원가개념(무형자산)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등 S/W개발에 대한 적정가치 반영을 통한 환경개선 필요

☑ 개선방향

- 무기체계 구성요소 및 임무수행 난이도를 반영한 국방분야 소프트웨어 산정가이드 마련
- 국내개발 S/W에 대한 적정가치 책정방안 마련
* S/W 국산화 수입가격인정제도 마련

II. 방산원가 주요정책-방산원가 구조개선(25년 시행예정)

3 빅데이터화를 통한 비용분석-원가산정 신뢰성 제고

☑️ 현실태/문제점

- 국내방산업체 76개 중 12개업체만 국방통합원가인증업체로서 계약이행과 관련한 실적자료 제출로 방산분야 원가자료 완전성 확보를 위해 확대 필요
- 국방통합원가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지만 종이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등에 많은 행정소요 발생

☑️ 개선방향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일반 하도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부품관리번호 중심의 WBS 및 C-BOM 관리체계 일원화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 고도화 사업 진행간 문서인식기술(OCR)을 통해 시스템을 통한 실물증빙 최소화

☞ 향후 자동화된 원가산정 체계 구축을 통한 원가자료 환류로 비용분석 신뢰도 향상 및 정부 예산 효율화 가능
* 비용분석 시 노임단가, 재료비, 제비율, 경비 등 원가 자료 활용 가능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3.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주요 정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주요 정책

III.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주요 정책

절충교역 개요

-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적용대상) 국외로부터 1천만 달러 이상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 (반대급부) 기술이전,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무기체계의 개발·생산 참여, 군수품 수출, 정비물량 확보, 민수품 수출

절충교역 정책방향

- ☑ 기술이전 중심에서 부품 제작·수출 확대로 전환 및 수출산업협력을 통한 수출절충교역 지원
 - (부품 제작·수출 확대) 산업협력 쿼터제 및 사전가치촉적 제도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중소기업 참여 확대) 중소기업 절충교역 유망목록, 국외업체 대상 유망 중소기업 제품 소개 및 수출 성사 시 가치승수 우대 등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확대
 - (수출산업협력) 가치상계 및 대신이행정산 제도 도입을 통해 방산업체 수출 절충교역 이행을 지원



III.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주요 정책

절충교역을 통한 부품제작·수출 지원 방안

☑ 중소기업-국외업체 간 1:1 수출상담회 운영

- 국외업체 구매 담당자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이 1:1로 상담하는 수출상담회 개최
- 방산 부품·장비대전 및 ADEX 등의 국제행사에 맞춰 매년 1 ~ 2회 개최

☑ 절충교역 맞춤형 컨설팅

- 절충교역을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절차 및 참여정보 등을 설명하는 맞춤 컨설팅 실시
- 유선상담을 통해 신청업체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수시)

☑ 글로벌 방산대기업과 방산혁신기업 매칭 확대

- 방산혁신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해 글로벌 방산대기업 대상 혁신기업의 기술력 및 제품 소개 등 추진
- 록히드마틴 등 14개 국외기업과 2~3개 방산혁신기업 간 수출상담회 개최 예정(매월)

III.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주요 정책

수출산업협력 지원

☑ 개요

-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수출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출산업협력 이행을 지원

☑ 지원근거 및 방안

- (지원근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
- (지원 방안)
 - * 가치상계 : 양국 간 협정에 따라 당사자간 절충교역 의무를 상호 감면 또는 면제
 - * 대신이행정산 : 국내업체의 수출절충교역 의무를 우리 청에 절충교역 의무가 있는 국외업체가 국내업체를 대신해 구매국에 이행

☑ 지원기준 및 수혜업체 의무

- (지원대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21.2.5.) 이후 수출계약 체결 건
- (지원한도) 총 의무가치의 50% 이내
- (수혜업체 의무)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지원펀드 등·에 정부 지원가치의 10% 이상(중소기업 5% 이상)을 현금 출자
 - * 방산기술혁신펀드, 방위산업공제조합, 상생협력기금 등

☑ 향후 계획

- '가치상계' 지원 방안 시행 : ~'24. 4월
- '대신이행정산' 지원 방안 시행 : ~'24. 7월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4.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 1 개요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 3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적용 제도 마련
- 4 디지털 트윈 활성화 방안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1 개요(1/3)

■ 디지털 트윈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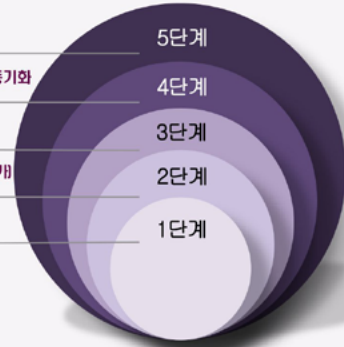
(출처 :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ETRI, 2021)

- 가상세계(Digital)에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D 모델로 구현하고, 이를 실제 사물과 실시간으로 동기화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 분석, 예측 등 해당 사물에 대한 현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



복수
객체
↕
단일
객체

- 자율** : 강력한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 무인화 (Autonomous)
- 연합** : 이종 도메인 상호작용 연합 동작 모델을 통한 동기화 (Federated)
- 모의** : 객체 동작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Modeling & simulation)
- 관제** : 현실객체와 통신 연결(객체 이동성x 동적 M&S 불가) (Monitoring)
- 모사** : 2D 또는 3D로 모사되어 시각화 (Mirroring)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1 개요(2/3)

■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 국내

- HD현대, 한화오션 등은 설계 및 공장 가상화를 통한 생산성 혁신 노력 중

가상시스템 통합 및 시스템 최적화(HD현대)



- ▶ (출산 태화호) 가상의 해상 환경에서 자율운항 여객선의 출항~항해, 집안 등 실제 선박의 운항 시나리오를 그대로 시연해 안전성 검증
- ▶ (블루 웨일호) 독자 선박 통합 자동화 시스템 최초 적용, 선박 용골거치 단계에서부터 통합 HILS를 구축하여 실선 시운전까지 지원



자율운항선 관제 센터 및 스마트 야드 구축(한화오션)



- ▶ (관제센터) 자율운항 선박의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선박의 안전운항 및 경제운항 솔루션 제공
- ▶ (스마트야드) 실시간 해상 시운전 정보 수집 및 분석, 안벽 호선 및 야드 내 생산 공정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분석 및 예측 가능



디지털 트윈으로 등대공장 선정(LG전자)



- ▶ 등대공장 선정시 주요 요인 중 '디지털트윈, 물류자동화, 지능형생산자동화'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 ▶ 가상 공간에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10분 빠르게 공장을 가동하고 고장상태에 미리 대비 (불량 원인 분석시간 50%, 불량률 30% 감소)



대·중소기업간 최적 밸류체인 구축(LS일렉트릭-세한주식회사)

- ▶ 밸류체인 내 대기업 - 협력기업 간 생산계획~출하 까지 전 공정의 스마트화 및 동기화 진행
- ▶ 개별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관리되던 데이터의 전산화 및 밸류체인 전 공정에 대한 실시간 접근으로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가능 (설비 종합효율 +9%p 증가, 재고회전 -7%p 감소)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1 개요(3/3)

■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 국외

➢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획득 절차에 적용

(미국) 획득절차는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군수품 총수명주기관리까지 포함됨

“디지털 공학(DE)/스레드(DT)/트윈(DTw)” 로 불리는 M&S 기반의 신개념 방법론 추진 중

✓ “디지털 스레드/트윈” 개념은 美 국방부에서 2010년에 정책과 절차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 DoDI 5000.02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모델 기반의 “디지털 공학(DE)” 개념으로 통합하여 시범 적용 및 절차를 구체화 중이다. 또한 美 공군은 2013년에 『과학 기술 비전』에서 생산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선정

미해군의 디지털 트윈 적용 전략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DoD
Digital
Engineering
Strategy

2020 USN/MC
Digital
Systems
Engineering
Transformation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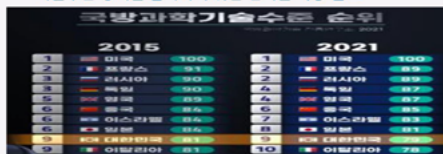
DoN DigitalTwin
Strategy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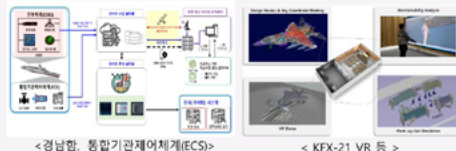
기술발전에 따른 R&D 기술진보 대응

-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 정체 9위(15~21)
→ 기술수준 정체를 탈피하기 위한 신기술 적용 필요



출처 : 대한민국 방위 산업, KBS 시사기획 창, 2023. 9

- 잠수함, 전투기 등 VR 등으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여 효과
→ 인간공학설계(HDR) 등 최적화로 안전성 및 편의성 증대



잠수함 등 일부 디지털 트윈 적용 → 확산

신기술 디지털 트윈의 무한 잠재력 내재

- 획득단계뿐 아니라 운영유지, 작전분야까지 활용 가능성 확인
→ 청역할 고려 시 1/2의 편익이 아닌 3/4 수명주기의 편익에 대한 이해 필요



- 극한환경 시험 및 반복적인 평가 등 일부 대체 가능 판단
→ 시험평가 시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인력 절감 기대효과



전력화 준수 등으로 국가방위력 제고 기여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3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제도 마련

-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893호(2023. 12. 28. 제정)



디지털 트윈 관련 주요 용어 정의



디지털 트윈 적용 기준 및 범위 설정



디지털 트윈 적용 기술단계 재정립



디지털 트윈 적용 추진 방안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디지털 트윈 관련 주요 용어 정의

디지털 트윈 적용기준 및 범위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 재정립

디지털 트윈 적용 추진 방안

-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무기체계(핵심부품·구성품 등을 포함한다)와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객체를 구현하여 상호 실시간으로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기체계를 최적화 하는 기술
- “디지털 트윈 적용 수준(DTL : Digital Twin Level)”은 디지털 트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와 기술적 난이도(체계복잡도·위험도)를 고려하여 정한 정략적 수준
-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라 함은 인간의 디지털 트윈 기술 5단계 개념(모사·관제·모의·연합·자율)을 국방 분야에 적합하게 재정립(설계·관제·체계가상화·연계·결심)한 것
- “가상실험”이라 함은 DTL II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무기체계 최적화를 위한 실험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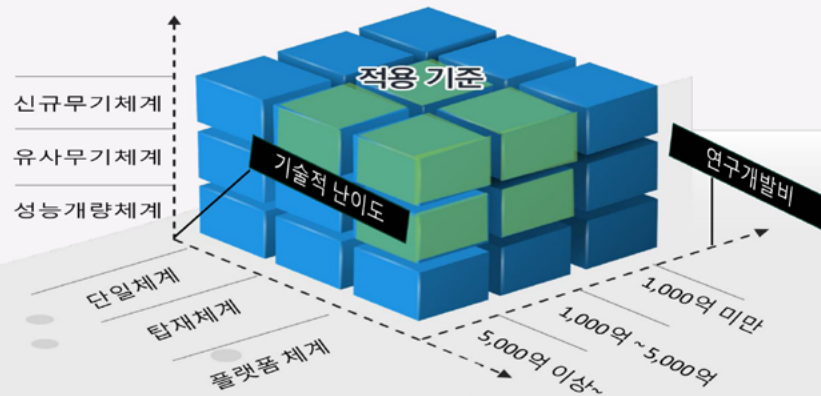
디지털 트윈 관련
주요 용어 정의

디지털 트윈
적용기준 및 범위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 재정립

디지털 트윈 적용
추진 방안

디지털 트윈의 목적성(비용절감, 기간단축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기술적 난이도(체계 위험도·복잡도)를 지표로 선정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디지털 트윈 관련
주요 용어 정의

디지털 트윈
적용기준 및 범위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 재정립

디지털 트윈 적용
추진 방안

* Digital Twin Level : 디지털 트윈 적용 수준

- 연구개발비,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 DTL 0~II단계 설정

구 분		기술적 난이도			구 분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지원단
		하	중	상			
연구 개발비	1,000억 미만	DTL 0	DTL I	DTL I	DTL 0	미적용	미운영
	1,000~5,000억 미만	DTL 0	DTL I	DTL II	DTL I	적용	미운영
	5,000억 이상	DTL I	DTL II	DTL II	DTL II	적용	운영

DTL에 따른
디지털트윈 및
지원단 운영

연구개발비, 난이도에 따른 분포도



* '24년 이후 착수 예정 사업(75개)으로 분석

구 분	대상 사업 수	비율
DTL 0	44개	58.6%
DTL I	23개	30.6%
DTL II	8개	10.8%
계	75개	100%

→ DTL I, II 해당 사업 수 31개 (41.4%)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디지털 트윈 관련 주요 용어 정의

디지털 트윈 적용기준 및 범위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 재정립

디지털 트윈 적용 추진 방안

- 적용대상 : 체계단위 또는 핵심 부품·구성품을 우선 적용

➤ 체계 단위

**사용자 안전성 및
편의성이
요구되는 체계**

**체계의 파손 및 결함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체계**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체계**

➤ 핵심 부품·구성품

**시험평가 시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1회 시험으로
파괴되는 품목**

고장 발생 시 체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등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디지털 트윈 관련 주요 용어 정의

디지털 트윈 적용기준 및 범위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 재정립

디지털 트윈 적용 추진 방안

-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 국방분야 재정립 및 DTL 단계별 적용



- 설계 : 3D로 형태를 설계하여 시각화(애니메이션)
- 관제 : 시제품에 부착된 센서로 단순한 정보(위치, 속도) 데이터 수집
- 체계 가상화 : 수집된 데이터 및 동역학을 통해 가상 상황에서의 결과 예측
- 연계 : 무기체계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상호 작용
- 결심 : AI, 빅데이터 기반의 모든 체계의 정보를 통합하여 의사결정 지원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 디지털 트윈 관련 주요 용어 정의
- 디지털 트윈 적용기준 및 범위
-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 재정립**
- 디지털 트윈 적용 추진 방안

■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 국방분야 재정립 및 DTL 단계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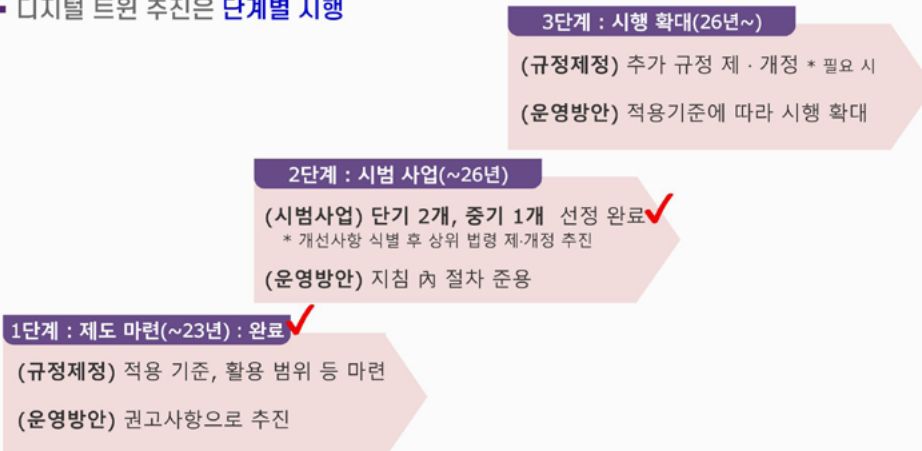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 디지털 트윈 관련 주요 용어 정의
- 디지털 트윈 적용기준 및 범위
-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 재정립
- 디지털 트윈 적용 추진 방안**

■ 디지털 트윈 추진은 단계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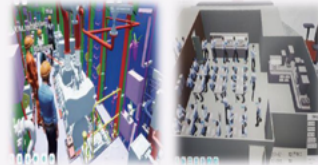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4 디지털 트윈 활성화 방안(1/2)

■ 업체 지원

- 디지털 트윈 3D 설계 수행을 위한 방산 중소·중견 기업의 3D CAD 보급 지원방안 추진
 - 방진화와 3D CAD 개발사간 MOU 체결로 방산기업 대상 무상 교육, 설계 기술 및 할인가 지원 등



-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한 각종 센서, CAD 활용 등 관련 원가 100% 보전
 - 디지털 트윈의 초기 투자 비용 발생에 따른 업체 부담 해소



IV. 방사청 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적용 활성화 방향

4 디지털 트윈 활성화 방안(2/2)

■ 정보 교류

- (네트워크 長) 학계 및 타 출연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Pool을 구성하여 자문단 운영
 - 국방분야 디지털 트윈이 정착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산, 학, 연, 군 가교 역할



■ 정부 역할 확대

- 디지털 트윈의 본격 추진을 위한 표준화된 공통 아키텍처 등 구축·도입
 - 디지털 트윈 가상시험을 통한 평가 시 공통적으로 제공될 기준 데이터 환경 모델 개발 추진 등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5.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국방반도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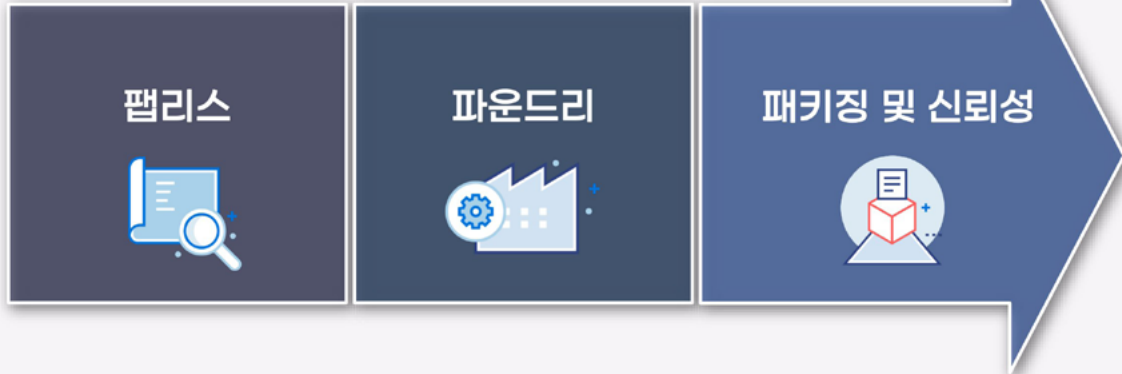
무기체계 등 군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장비, 모듈, 부품 등에 적용되는 반도체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국내반도체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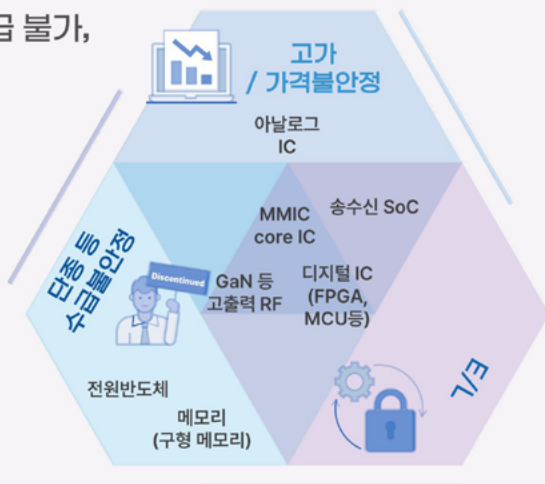
국내 반도체산업 현황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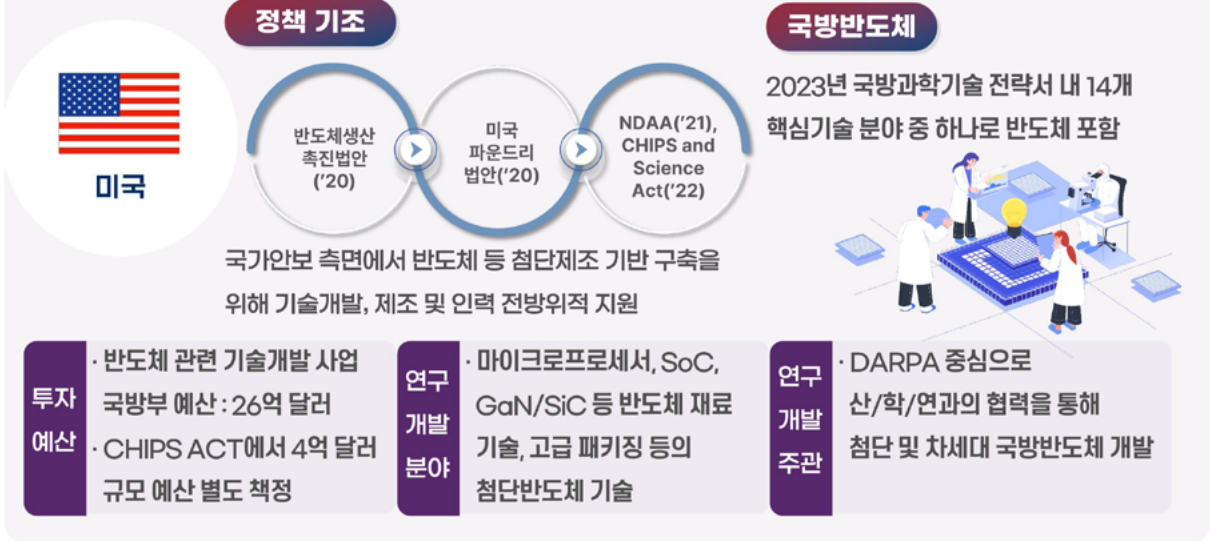
국방반도체 조달 현황

99% 이상 해외수입에 의존, 단종에 따른 수급 불가, 가격불안정성 및 E/L 등 문제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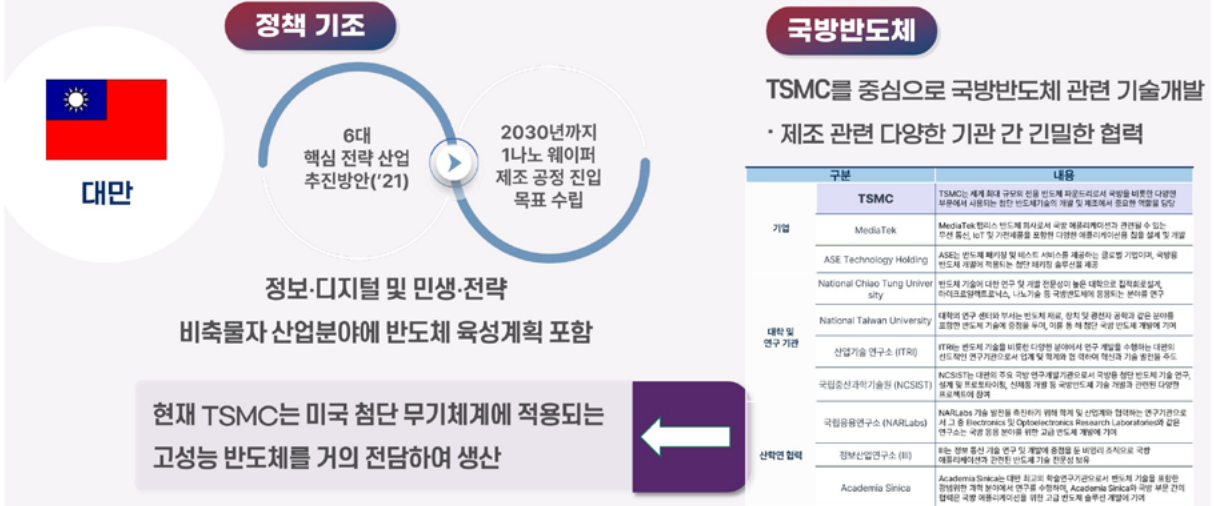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주요 선진국 반도체산업 및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주요 선진국 반도체산업 및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한국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추진 중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률 제·개정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국방반도체 공정 국산화의 필요성

현재 국방반도체 공정의 해외(특히 대만) 의존도는 매우 높음

국내 개발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IP는 대부분 미국업체가 소유하나,
제조공정은 TSMC 등 대만기업에 의존

해외 조달상황 변화로 반도체의 적시적인 공급이 제한될 시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 불가

-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해 무기체계 내 반도체의 중요성 증가
-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를 위해 국방반도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 필요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국방반도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현재까지 수립된 국내 반도체 분야 육성계획에는
국방반도체와 관련된 추진계획이 사실상 전무 하며,
연구개발 중심의 지원 및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 중심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민간 시장에서 경제성이 낮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유인 부족

따라서, 산업기반 형성 및 육성을 위해 국가 주도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필요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1. 현황조사 및 분석 정례화

전력화 완료 / 전력화 예정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반도체 현황 조사 및 분석

국방반도체 분류

신규
설계 대상
반도체

생산공정
국산화 대상
반도체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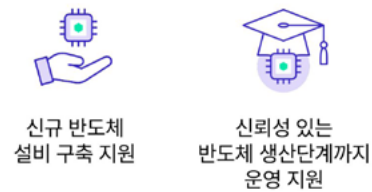
2. 국방반도체 사업

국방반도체 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국방반도체 사업 적용

연구개발 사업



생산공정 국산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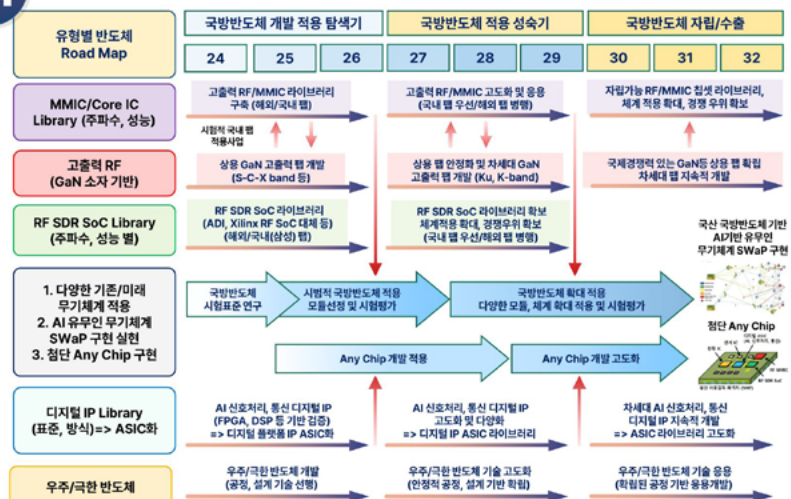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2. 국방반도체 사업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 로드맵



* 개발된 칩은 단계별로 1년 동안 신뢰성 시험과 필요에 따라 구성품 (모듈) 탑재 시험 진행

* 개발된 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은 25년부터 추진하며 유망할 반도체 및 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결과를 피드백하여 개발에 반영

* SWaP (Small, low Weight, and low Power)로서 초소형, 초경량, 저전력의 무기체계 구현이며 양산성 향상으로 대량 생산 유리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2. 국방반도체 사업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원

간접지원

국유/공유재산 임대
부담금 감면

조세에 관한 특례
인허가의제 특례 등

연구개발(팹리스) - 생산(파운드리)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지원

직접지원

설비투자 등
인프라
투자비용

신뢰성 있는 반도체
양산 단계까지 소요
되는 시험평가 비용

시설 및 인력 운영비용 등

V. 국방반도체 발전방향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3. 국방반도체 구매촉진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 사용 시 입찰 참가 체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업체 - 2,3차 벤더 - 체계개발기업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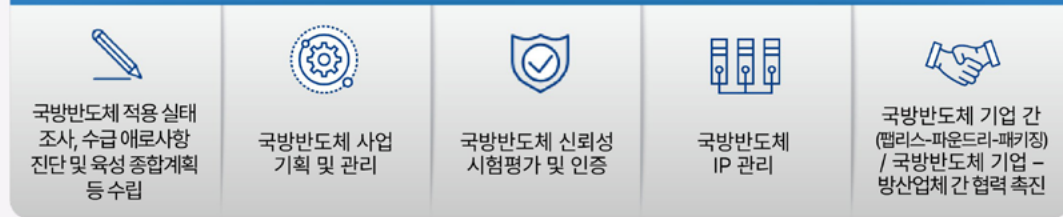
47 —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4. 전담조직 신설

국방반도체 전담조직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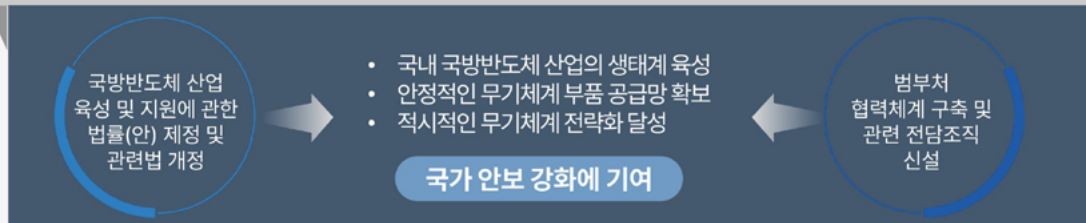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및 관련법 개정

그리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육성, 안정적인 무기체계 부품 공급망 확보하여

적시적인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달성,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6.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지원시책 수립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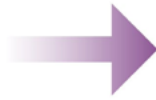
- ☑ 미래전장을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추진을 통한 K-방산 선순환 구조 마련
- ☑ 기술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식별하고 R&D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방산육성 고도화 추진
- ☑ 고성능 첨단 핵심부품의 선제적 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 ☑ 정부-지자체-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방산분야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과 활성화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3대 분야 10개 중점 과제

추진 목표

K-방산 성장을
주도하는
국방첨단
전략산업의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I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계 일류기업으로의 성장 견고화

- 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세계 일류 중소·벤처기업 육성
- ②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핵심 소부장 경쟁력 확보 및 방산 기초체력 강화
- ③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II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 ④ 방산 혁신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추진
- ⑤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분야 중심의 혁신 R&D기업 집중 육성
- 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의 고용 창출 기여
- ⑦ 첨단전략분야 방산혁신펀드와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집중 지원

III 방위산업 생태계 확대와 상생협력 성장 고도화

- ⑧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추진
- ⑨ 대·중소기업 혁신역량 공유를 통한 방산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
- ⑩ 지역 거점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밀착 지원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1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세계 일류 중소·벤처기업 육성

◆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진입부터 수출경쟁력 강화까지 빈틈없는 성장단계별 지원 고도화 추진으로 세계 일류기업 육성

☑ (진입)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의 사업화 지원 기능 강화

- 인큐베이팅 시제품에 대한 방산전시회 참가 및 체계장착시험, 군·체계기업 연계 등 사업화 집중 지원으로 국방분야 조기 진입
- * 지원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및 지원한도 증액(1억→2억)을 통한 사업화 지원강화 추진
- 시제품 사업화 지원 강화 및 성장단계 상위 도약을 위한 컨설팅, 정보 공유 등 “기업-기업 상생협력, 공유의 장” 마련

☑ (성장) 국방벤처 지원사업 일반과제 및 혁신과제 개편 추진

- 일반과제 우수 기술을 선별하여 혁신과제로 연계하고, 혁신과제는 부품국산화 사업으로 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 혁신과제 과제기획 시 부품국산화 활용성이 높은 기술 분야 중점 발굴 및 혁신과제/부품국산화 성공기업 간 기술교류회, 세미나 등을 통해 사업간 연계성 강화



1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세계 일류 중소·벤처기업 육성

☑ (확장) 부품국산화의 글로벌 부품경쟁력 확보 위한 기반 확충

- 방산부품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방산부품산업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다각도 검토 추진
- 방산소재부품 협력 MOU후, 산업부와 협조체계를 통해 『부처합동 방위산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 기반 개발·관리 추진
* 40개 품목에 대해 부품국산화 사업, 민군기술협력,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산업부) 등 추진

☑ (고도화)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사업을 통한 방산수출지원 활동 강화

- 기여도 대비 매출액 산출을 통해 성과에 대한 정량화(기술로 산정방식 준용) 추진으로 수출, 매출성과 목표 근거 마련

☑ (집중육성) 방산혁신기업 100 추진으로 혁신적 R&D기업 육성

- '26년까지 방산혁신기업 100개사 선정, 최대 5년간 50억원 지원
- 5대 분야 기술융합 사업화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홍보 강화

☑ (초단계) 기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으로 상위단계 도약 집중 지원

- 개발과제 성공기업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시 선정평가 간소화 추진 및 성장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에 맞춤형 해결책 제시
* 개발기술의 무기체계 활용방안(진입·성장) 및 부품국산화 연계, 국내 마케팅 제안서 작성(도약·확장) 등 성장단계별 컨설팅 지원

2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핵심 소부장 경쟁력 확보 및 방산 기초체력 강화

◆ 고성능 첨단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선제적 부품국산화 추진

◆ 부품국산화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지원체계 고도화로 방산 기초체력 강화

☑ 소요제기를 통한 부품국산화 과제발굴에서 벗어나, 무기체계 및 부품 정보분석을 통한 전략적·선제적 부품국산화 추진

- 부품종합정보 기반으로 관련기관 협업, 중점 무기체계 선정, 국산화 소요를 집중 발굴, 개발하는 『패키지형 부품국산화』 추진
- 부품국산화 과제기획 순기를 조정하여 선제적 과제기획으로 로드맵 기반의 전략적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2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핵심 소부장 경쟁력 확보 및 방산 기초체력 강화

☑ 고난도·고비용·고성능 주요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어달리기 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 분야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산화를 높은 분야는 전략소재·부품 국산화하여 수출 걸림돌 제거 및 국방기술력 제고
- 원천기술 부족으로 국산화를 낮은 분야는 선행요소기술 식별 후 핵심기술사업-부품국산화 사업 이어달리기 개발 추진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확장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 발전사항을 도출하며, 방산부품기업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모색

- 수출연계형·전략부품국산화 등 '21년 이후 사업유형 다변화의 효과 분석 후 유형별 발전방향 도출 및 제도개선 추진
-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지원사업 절차 합리화 및 비용검증 강화, 전문기관 차원의 부품국산화 사업 위험관리 체계 마련
- 방산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방산부품 개발·관리 전담조직 등 지원체계 강화방안 다각도 검토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3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개선을 통한 방산 수출 기반 견고화

☑ 급격한 방산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금형·생산설비 고도화 등 생산성 향상 지원

- 무기체계 부품 생산 중소기업의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위한『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설
 * 대규모 수출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 방산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
- 수출양산 확보를 위한 ① 금형 고도화·신규제작 ② 생산설비 자동화 및 노후시설 개선, 검사·시험장비 확충 등 집중 지원
 * 금형 : 기업당 최대 80백만원 지원 * 총 소요경비의 75%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설비 : 기업당 최대 450백만원 지원 * 총 소요경비의 50%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3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과제 성공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

- 과제선정 평가 시 수출가능성 판단 기준(특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을 정량화 및 구체화하여 우수한 과제 및 기업 선정 추진
- 지원사업 성공과제에 대해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연계하여 군 활용성을 높이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로드맵 마련

☑ 절충교역(산업협력)을 활용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방산수출 확대

- 기업DB(수출실적, 인증획득현황 등) 구축을 통해 국외기업과 매칭
- 절충교역 부품제작수출, 가치촉적합의서 등을 통한 수출 지원

4 방산 혁신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추진

◆ 방위산업을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집중 육성

☑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방첨단전략산업(우주, AI, 반도체, 로봇, 유무인복합)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 방산분야의 혁신기업 지정과 특별한 혜택 확대 추진
 - * 민간첨단기술 기업 중, 국방활용도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27년까지 확대하고 금융지원, 정보공유 등 혜택 지원
-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분야 전문기업 지정 제도 추진
 - * 개발품우선구매, 착종도금지원, 기술개발 과제 시 가점 등 방산업체에 준하는 혜택 부여 등
- 국방전략산업기술 지정으로 업체 자체 투자 활성화 유도
 - * 방위산업 분야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신규지정(기재부)를 통한 세제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산분야 투자 확대화 유도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5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 중심의 혁신 R&D기업 집중 육성

미래전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략 집중육성 추진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풀 마련과 K-방산 수출을 위한 선순환 구축

☒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 양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여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지정 육성

- 국방첨단전략분야 기업풀(약 8,800개사) 마련과 집중육성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식 마련 및 첨단기업, 기술에 대한 법제화 추진
- 방산혁신기업 100 R&D 전용지원 과제 선정 및 3기 기업 선정을 통해 국방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기틀 마련
- 우주, 반도체, AI, 로봇 등 혁신기업을 발굴 및 Full-Package 지원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5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 중심의 혁신 R&D기업 집중 육성

☒ 방위산업 고도화지원 사업을 통한 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각종 혜택 강화

- (자금지원) 첨단전략분야의 기업에 대한 방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별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혁신 R&D기업으로 도약 지원
* 방산혁신기업100(380억원), 글로벌방산강소기업(145억원), 국방벤처지원(109억원) 등
- (고용창출) 방산혁신기업100 산학연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지역과 연계한 첨단전략분야 우수인력 양성 추진
* 방산혁신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기반의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

☒ 국방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술 매칭과 연계, 통합을 통한 Package Project 및 부스 마련을 통한 국내·외 전시 및 홍보 추진

- 국방첨단전략 5대 분야의 다양한 기술 융합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방산혁신기업100 기술 통합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이 낙후된 국가의 방산전시회 참여 등 국내·외 기술교류회, 우수 기술, 제품 홍보 추진



6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첨단전략산업 핵심인력 지원

◆ 방산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방산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방산분야로 지속 유입

☑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 연구개발 인력 및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계약학과) '23년 개설된 『국방무인·로봇 및 AI 분야』 '24년도 신입생 선발 및 교육과정 지속 운영
- (대졸 미취업자)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집합교육 및 기업실무 연수 운영을 통해 지역 소재 방산기업 취업연계 강화
- (특성화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방산분야 전문교육 강화 등 추진

6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첨단전략산업 핵심인력 지원

☑ 지방소재 방산기업의 인력부족 심화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의 인재양성, 기업 취업지원 등 지역중심의 인력양성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지역(광역시·도) 단위의 기업, 대학, 지자체로 구성된 『지역별 방산 인력 수급·양성 협의체』 구성 추진
* 협의체를 통해 권역내 인력수요 조사, 지역특화 산업 중심 일자리-인력양성 연계, 지역 인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 추진
-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밀착형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매칭 중점 지원

☑ 방위산업 우수인재 양성 및 방산기업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신규 사업 검토 추진

- 대학 학부과정에 방산 전공트랙 개설 등을 통한 방산 특성화 대학 신규 지원('25) 추진 및 교육부 등 타부처 주관 정책·사업과 연계지원 추진
- 지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인력수요 대상별 방산 전문교육과정(비학위) 통합 운영 및 취업지원 추진
* 현행 방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25년부터 지역거점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개편 추진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7 첨단전략분야 방산혁신펀드와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집중 지원

- ◆ 기술력이 우수한 첨단전략산업분야 영위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추진으로 글로벌 기업 진입 지원

☑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술력 우수 방산기업과 방산진출 희망 첨단분야 벤처기업에 투자 확대

- 방산기술혁신펀드 1·2호자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유망기업에 풍부한 자금 공급
- 3호자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수립 및 운용사 선정

☑ 방산분야 기술금융 이용 애로 파악 및 해소를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 (업체 애로 파악) 방산전용상품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기술금융 이용관련 기업 의견조회 실시 및 개선 사항 파악

☑ 방산혁신기업100 기업이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융자 신청 시 사업계획서 우선 검토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8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추진

- ◆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과 창출 노력 및 소통을 통한 효율성 제고
- ◆ 방산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전략 수립

☑ 철저한 사업관리 및 지자체·사업단 등 원활한 소통을 통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성과 창출 유도

-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클러스터별 맞춤 관리
 - * (경남·창원 시범) '24년 사업 종료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 창출 집중 및 사업 마무리 절차 마련
 - * (대전 드론 특화) 전반적인 중간 점검을 통해, 세부 사업별 목표 구체화 및 정량적 성과 창출 방안 수립
 - * (경북·구미 유무인복합체계 특화)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본격적인 국방 중소·벤처 업체 지원 추진
- 클러스터별 소통회의 및 지역협의회 소위원회 활성화 추진을 통해 사업 효율성 제고 추진
-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및 지역 간 간담회를 통해, 공동과제 발굴 및 시험장비 상호 활용 MOU 추진 등 클러스터간 연계·협력 확대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8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추진

☑ 방산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전략 수립

- 지역별 방산 인프라, 특징, 연계 추진 사업 분석을 통한 지역연계 방산발전 및 협력전략 수립
-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계획' 작성 및 신규 클러스터 예산 확보 추진
* 전담기관(국기연) 주관 정책연구용역 결과 참고(~'24.5.)
- 타부처 추진 사업(소부장 특화단지, 국가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 방안 검토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9 대·중소기업 혁신역량 공유를 통한 방산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

- ◆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확대
- ◆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 대·중소기업 간 교류 및 관계부처·기관 협업

☑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 (인센티브 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방사청/중기부 사업참여 우대, 방산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중기부 사업 참여시 우대 방안 마련, 방산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등 관련법규 가점 체계 개편 검토
- (로드맵 수립) 인센티브 확대 및 방산 상생협력 과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24~'26 방산 상생협력 로드맵 수립
* ('24년) 상생협력모델 개발 및 상생협력 기금, 인센티브 마련 ('25년) 상생협력 시범사업 추진 ('26년) 성과분석 및 상생협력사업 확대
- (공동설명회) 상생협력 독려 및 상생협력사업 홍보를 위한 방산 대·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관계부처·기관 공동설명회 개최

9 대·중소기업 혁신역량 공유를 통한 방산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

- **[기업간 교류]** 관계부처·기관,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 권역별 상생협력 행사** 개최
* 방산 대·중소기업간 기술교류 및 방산혁신 중소기업 소개, 투자유치 등 프로그램 마련
- **(상생협의회)**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방산분야 상생협력 **공동과제·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점검

10 지역 거점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밀착 지원

- 국내 방산육성 공감대/저변 확대 및 방산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중심으로 『청·지자체 찾아가는 맞춤형 합동 컨설팅』 추진
- 우수 중소기업, 국방첨단전략산업 R&D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 지자체(기관 등)와 상호 협력 강화 추진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10 지역 거점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밀착 지원

☑ 우수 기업 발굴 및 국방 진입을 위한 국방벤처센터 역할 강화

- 국방벤처센터에 대한 방산육성·지원 활성화 업무 전담 추진
 - * 우수기술 보유기업 식별 →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적극추천 및 협조 → 벤처센터 협약기업 역량진단(기술역량/국방경험 평가) → 기업역량별 맞춤형 지원책 제시 및 성장 근접 지원
- 국방벤처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국방벤처 거점지원』 사업 추진('24년 5억원 신규 반영)

☑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국방벤처센터 협력 강화

- 지역의 우수 혁신기업 관리를 위한 국방벤처센터와의 업무 견고화
 - * 권역별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와 국방벤처센터가 협력하여 기술교류회 등 주요 행사 개최 및 협약기업 현황/실적 공유
- 권역별 목록화 된 지역 중소기업 대상, 청 주요행사, 지원사업/설명회 등 최신 정보 제공(가칭:방산중소·벤처기업 뉴스레터, 월1회)

VI. '24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

정부 예산 현황

사업명		'24년 예산액(억원)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1,237
전문인력 양성		17
컨설팅 지원사업		7
방산 고도화지원 사업	국방벤처 인큐베이팅	2
	국방벤처지원	110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146
	방산혁신기업 100	390
지역연계 생태계기반 구축	방산혁신클러스터	125
	생산성 향상지원	23
계		2,057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7.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및 금융지원 정책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및 금융지원 정책

Ⅶ.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및 금융지원 정책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 ☑ (목적) AI, 우주, 드론 등 민간 첨단기업을 국방분야로 유입, 집중육성
- ☑ (대상) 첨단기술 분야 중 물자, S/W,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 (혜택) 수의계약 등 방산업체에 준하는 혜택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혜택 제공
- ☑ (기간) 지정기간은 기본 5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후 재평가

Ⅶ.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및 금융지원 정책

1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제도(안)

기업
자체개발

→

기품원
표준/인증

→

방사청(방진국)
국방첨단
전문기업 지정

→

방사청(IPT)
조달
(수의/관급)

→

기업
납품

표준(기품원)

- 첨단 분야별 보안, 운용환경 조건 등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 성능, 품질, 안전 등을 ‘국방표준서’로 제정

인증(기품원)

- 각 분야별 ‘국방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및 요구사항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DQMS 등 활용)

국방첨단전문기업(방사청)

- 인증 받은 물자, S/W,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술난이도, 글로벌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Ⅶ.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및 금융지원 정책

1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제도(안)

국방첨단전문기업

- 지정대상
 - 첨단전략 5대 분야 중 특정업체로부터 지속적 조달이 필요한 물자, 서비스, S/W
- 지정혜택
 - 지재권 업체소유
 -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수의계약
 - 분야별 특성에 맞는 혜택 제공
- 지정기간
 - 기본 5년, 이후 재평가
- 의무사항
 - 정부소요의 지속적 공급
 - 운영유지 지원 의무
- 획득방법
 - 신속연구개발, 신속소요, 구매

방산업체

- 무기체계 중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자
- 방산원가적용
- 수의계약
- 착중도금 지급 등
- 방산업체 지정 취소 까지
- 망분리 및 원가자료 제출
- 생산시설, 인력확보 의무 등
- 체계개발, 구매



1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제도(안)

- | | |
|---|------------|
| ☒ 첨단 분야별 특성 분석 및 관련 업계 의견수렴
▪ 관련 정책연구 추진 예정 | : '24년 상반기 |
| ☒ 관련 규정 및 법령 근거 마련
▪ 「방위산업발전법」 관련 조항 신설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개정 | : '24년 하반기 |
| ☒ 각 분야별 국방표준서 제정 | : '25년 |
| ☒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시행
※ 국방우주 분야부터 시범적용 및 우선추진 | : '26년 |

1 국방첨단전문기업 지정 제도(안)_국방우주 시범추진

- | | | |
|--|---|--|
| ☒ 국방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
▪ 국방우주 제품인증 시범사업 추진(~'24년)
▪ 국방우주 표준서 제정('25년~) |  |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
| ☒ 국방우주 실증사업
▪ 국방우주실증 사업추진전략 수립(~'24년)
▪ 국방우주실증사업 공모/시행('25년~) | | 
<전용발사장 구축> |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전용발사장 구축>

2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금융지원 확대

☒ (투자 확대)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방산기업 · 민수벤처기업에 투자

- **기술력 높은 방산기업과 방산진출을 희망하는 민수첨단 벤처기업에 투자 지속**
 * '24년 연간 약 150억원('23년 80억원 대비 88% 이상 투자 확대) 이상 투자 예정
- **2호 자펀드를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민수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 기술실시권 구매,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M&A 등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기술을 추가·개발하는 방식

☑ (저리대출)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 개시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선정기업의 사업안정화 단계까지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자금,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 '24. 3.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방산혁신기업100'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후 1분기 이내에 이차보전 신규용자 사업 공고 개시

3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신규지정

☒ 추진내용

- '23년 상반기부터 기재부와 협업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추가 노력
 - ✓ 방위산업 분야의 중요성, 기업의 자체투자를 지원하여 첨단기술 조기 확보 필요성 강조
 - ✓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역량집중의 필요성 강조
- 기재부 검토 결과 : '신성장 · 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신규지정(3개 기술)
 - ✓ 방위산업 분야의 중요성 인정, 다만 타 산업의 경우에도 '신성장 · 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
 - ✓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필요



3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신성장 · 원천기술’ 신규지정

☑ 추진체계 기술

- 유무인 항공기, 기동장비, 유도무기, 함정 등에 장착하는 터보제트엔진, 터보샤프트엔진, 터보프롭엔진, 터보팬엔진, 왕복엔진의 완제엔진, 부체계(엔진제어, 연료, 윤활, 기어박스 등), 구성품(팬,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배기노즐 등), 소재(내열 · 경량합금, 복합재, 고온코팅 등)을 설계, 제작, 조립, 인증, 시험평가 하는 기술

☑ 군사위성체계 기술

- 군사용 위성체계 중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의 위성체계(전력체계, 자세제어체계, 위성탑재컴퓨터, 송수신체계, 구조체 등), 구성품(위성통신송수신 안테나, 광학장비, 영상레이더, 항법체계 등), 관련 소재, 지상장비, 발사체(고체연료) 등을 설계, 제작, 조립, 인증, 시험평가 하는 기술

☑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 유무인복합체계에 필요한 환경인식기술, 위치추정기술, 자율임무 수행기술, 유무인협업기술, 무선통신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 의사결정지원기술, 원격통제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무인복합체계를 설계, 제작, 조립하는 기술

3 첨단전략산업 분야 ‘신성장 · 원천기술’ 신규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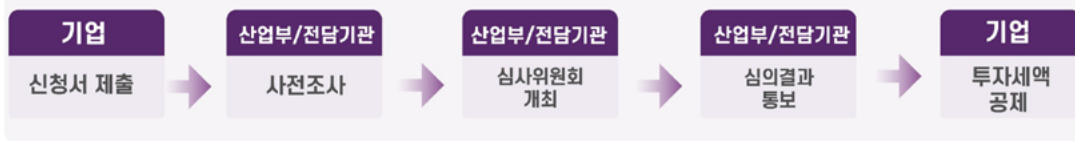
☑ 투자세액 공제율(%)

연구개발비
20+a % ~ 30+a %

시설투자비
6 % ~ 18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문의처 : 02-6009-3982~7
- 웹사이트 : taxcredit.kiat.or.kr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사업

1.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2. 방위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3. 수출지원 사업
4. 소프트웨어 신뢰성분석도구 무상 지원사업
5.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사업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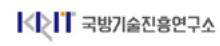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사업

1.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1.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1/9)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이란?

-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 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대상업체 : 중소기업 원칙(**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 전략부품국산화는 기업 유형 무관
- 지원대상(내용) : 국외 도입 핵심부품,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 적용 부품, 다체계 적용 부품 등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사업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다음페이지 참조
- 지원방법 : 주관기업 모집 공고(30일 이상) 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compas.krit.re.kr>)을 통해 신
- 기타 사항 : **창개발 성공 후** 1. 매출 발생 시 기술료 납부
2. 5년간 매년 개발 결과 활용실적 제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2/9)



유형별 세부내용

핵심부품국산화 (2010년~)

- ❖ 개발대상 : 국내 무기체계 적용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 ❖ 참여기업 : 중소기업 (필요시 중견, 대기업 참여가능)
- ❖ 지원규모 : 최대 5년, 100억원
※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은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수출연계 부품국산화 (2021년~)

- ❖ 개발대상 :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 적용 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 ❖ 참여기업 : 중소기업 (필요시 중견, 대기업 참여가능)
- ❖ 지원규모 : 최대 5년, 100억원
※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의 기업부담금(25% 이상)은 체계 업체가 부담

전략부품국산화 (2022년~)

- ❖ 개발대상 :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고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
- ❖ 참여기업 : 기업유형 무관
- ❖ 지원규모 : 최대 5년, 500억원 (총 과제비 기준)

※ 기업유형에 따라 총 개발비 차등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 50%)
※ 2024년 신규지원 규모 약 100억원 (지정공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3/9)

-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원칙 (단,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견/대기업 가능-공고시 별도표기)
 - ※ 전략부품국산화는 기업 유형 무관
- ☐

신청기한 및 방법

 - 주관기업 신청 : 통상 연 2회 모집
 - ※ 매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2024년 1차 모집 (4월 예정))
 - 신청방법 : COMPAS (부품국산화 통합정보체계) 온라인 접수 (<https://compas.krit.re.kr>)
- ☐

참여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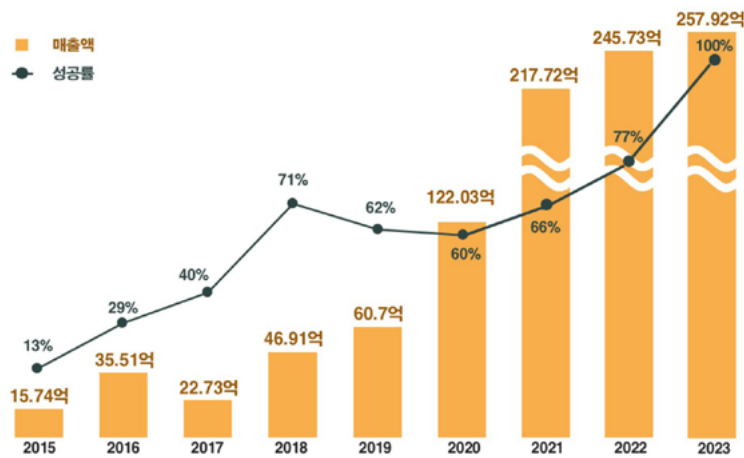
 -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 세부 내용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11조 및 사업공고시 공고문 참조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4/9)

- ☐

주요 성과

 - 2010년 사업착수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과 창출 중
 - * 현장밀착형 기술지원 및 개발관리로 최근 3년 성공률 80% 수준 유지
 - * 개발 성공시 5년간 수익계약을 통한 구매보장 등의 혜택으로 국산화 품목 매출실적 지속적 증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5/9)

주요 성과

[핵심부품] K계열 APU용 수평식 디젤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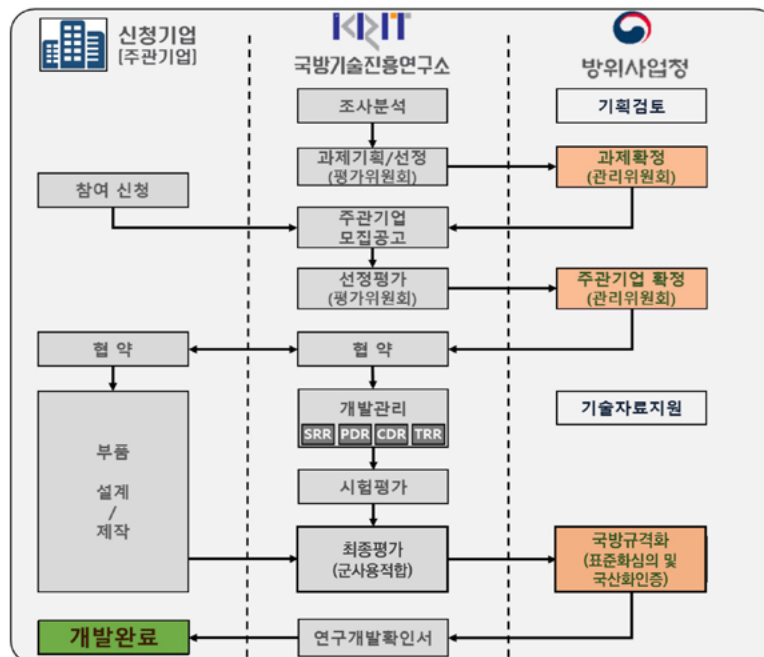
- 개발비/기간 : 20억원(정부지원금 15억원) / 2014. 11. ~ 2017. 10.
- 개발완료 후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 2018. 3. 14.
- 개발업체 : ㈜페리만&티젠
- 기능
 - 궤도차량 및 바퀴형 차량 등에 부족한 소요전력 공급 및 주엔진 배터리 충전 등
- 개발 성과
 - 핀란드, 터키 등 6개국 방산수출 등 92.64억 매출액 발생
 - 미국/유럽/아시아 등 민간수출로 총 40억원 수출효과 기대

[핵심부품] 천마용 방위각 로터리조인트 조립체



- 개발비/기간 : 17.69억원(정부지원금 13.25억원) / 2015. 12. ~ 2018. 12.
- 개발완료 후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 2019. 8. 20.
- 개발업체 : ㈜엘트로닉스
- 기능
 - 레이더 시스템에서 안테나의 방위각 회전시 고임없이 다채널의 RF신호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기능
- 개발성과
 - 체계장비 적용을 통해 38.73억 매출액 발생
 - 국내 생산을 통해 신속한 수급 및 정비 가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6/9) - 사업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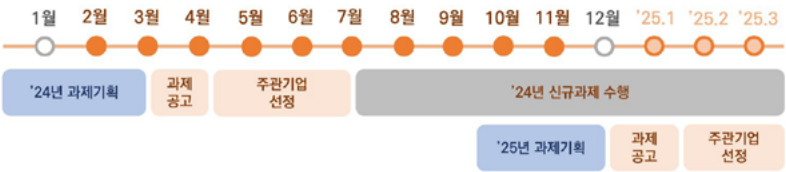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7/9)

☐ '24년 추진계획

- '24년 신규 과제 예산 : 99억원 (예정)

☐ 추진 일정



• 과제기획 : 소요조사 과제의 경제성, 국산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



• 예비공고 : 신규과제에 대한 산/학/연 및 관련업체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
 * 공고처 : 부품국산화정보체계(COMPAS), 방사청, 국기연 홈페이지 등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8/9)

☐ 유의사항

(부품국산화) 사업 신청 유의사항

- 참가자격, 신청요건, **참여제한 해당사항**을 사전에 확인 후 신청
 - 예1) 중소기업 지원과제인데 대기업이 공동개발기업으로 신청하여 서류 탈락한 경우
 - 예2)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참여가능한데 공동개발기업으로 신청하여 서류 탈락한 경우
- 공고문에 명시된 **예산 개발비 및 최대정부지원금**을 준수하고, RFP에 명시된 **필수 산정 금액**을 반영하여 사업비 산정
 - RFP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협약체결 불가
 - 체계적합성 시험비 : 핵심부품, 수출연계의 경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별도로 지급예정으로 개발비에 산정할 필요 없고, 전 략부품의 경우 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발비 산정 시 반드시 반영
 - 그 외 기술지원비용, 지재권 컨설팅 비용, 회계정산비용은 RFP 명시된 내용 확인하여 반영
- 필수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예) 필수제출서류인 과제수행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자료 미제출로 서류 탈락한 경우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부실 제출로 해당 비용에 대한 금액 미반영, 감액 등 불인정 조치 이루어질 수 있음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9/9)

☐ 자주 하는 질문

Q. 공동개발이나 참여기업으로 중견/대기업이 참여 가능 한가요?

A. 공고문 지원과제 대상 비교란에 중견/대기업 허용으로 명시된 과제만 참여 가능합니다.

Q. RFP에 명시된 체계적합성 시험, 기술지원비용 개발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A.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용은 핵심부품, 수출연계 국산화는 개발비에 포함할 필요 없고, 전략부품 국산화의 경우 개발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지원비용은 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함해서 개발비 산정해야 합니다.

Q. 업체에서 과제를 소요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과제 소요제기는 COMPAS를 통해 수시로 제기 가능하며, 지원양식을 참조하여
자원 가능합니다.

Q. 개발비 산정시, 예상개발비보다 적게 산정되었을 경우 가점이 있나요?

A. 적은금액으로 과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가점은 없습니다.

* 평가/협약 시 신청한 금액 기준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사업

2. 방위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방위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1. 국방벤처 지원사업 / 국방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1/7)

- ☐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 ☐
사업개요
- 대상업체 : 중소기업
 - 지원대상(국방벤처) : 현재 운용중이거나 개발중인 군수품에 적용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 지원대상(혁신기술) :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지원규모 : 사업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다음 페이지 참조
 - 지원방법 : 이메일 제출
 - 기타 사항 : 1. 매출 발생 시 기술료 납부
 2. 5년간 매년 개발 결과 활용실적 제출

국방벤처 지원사업 (2/7)

- ☐
유형별 세부내용
- 국방벤처 지원사업

 - 개발대상: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 기술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 기술
 - 참여기업: 중소기업
 - 지원규모: 최대 2년, 3억원 (총 사업비의 75% 내)
 - 공모형태: 자유공모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 개발대상: 고수준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 제품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며, 무기체계 적용 및 수출 등의 성과와 연계 예상되는 기술, 제품
 - 참여기업: 중소기업
 - 지원규모: 최대 3년, 20억원 (총 사업비의 75% 내)
 - 공모형태: 지정공모



국방벤처 지원사업 (3/7)

☐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희망하는 기업
※ 국방벤처센터 협약 체결 희망기업은 과제 선정 후 별도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 신청기한 및 방법

- 과제제안 : 연중 수시
- 주관기업 신청 : (국방벤처) 2월 예정
(혁신기술) 7월 예정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venture@krit.re.kr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 참여제한

-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세부 내용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1조 참조

국방벤처 지원사업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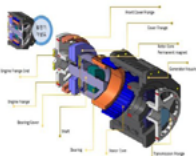
☐ 주요 성과

(국방벤처) 레이저 거리측정기용 1.5mJ급 마이크로 레이저 발전기



- 개발비/기간 : 4억원(정부지원금 3억원) / 2019. 5. ~ 2021. 5.
- 개발업체 : 대양전기공업(주)
- 기능 : 함정체계 구동계의 진동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구조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충격 방진기술을 적용한 통신체계장비
- 개발성과
 - 체계장비 양산 적용을 통해 23.7억원 매출 발생
 - 해외 에이전트를 통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 각국 수출 추진

(혁신기술) 고온(120℃) 운용환경에 적합한 영구자석형 전원공급장치 개발



- 개발비/기간 : 19억원(정부지원금 14.17억원) / 2020. 9. ~ 2023. 8.
- 기능 : 기동무기체계의 파워팩에 직접 연결되는 형태의 발전기로 기존 보조동력장치(APU)를 대체하거나, 하이브리드 동력계 구성시 활용(출력 100kW급, 효율 최대 95% 이상)
- 적용 가능 분야 : 차세대 기동무기체계(하이브리드 플랫폼) 기동무기체계의 파워팩에 직접 연결되는 형태의 발전기로 기존 보조동력장치(APU)를 대체하거나, 하이브리드 동력계 구성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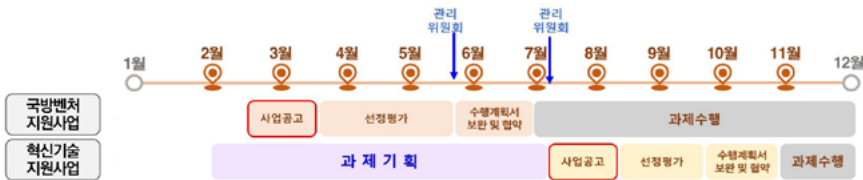
국방벤처 지원사업 (5/7)

'24년 추진 계획

주요 사항

- '24년 신규 과제 예산 : 33.6억원 (국방벤처 : 8개, 혁신기술 : 2개 선정 예상)
- 추진 중점
 - 기술의 최신성, 혁신성
 - 성과 창출 여부 (군 및 체계기업과의 연계성, 수출 가능성 등)

추진 일정



국방벤처 지원사업 (6/7)

유의사항

사업 신청 유의사항

- 서류제출방법
 - 원본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진행하며,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로 **별도 제출**
 -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 가점에 따른 서류 제출
 - 공고문에 따라 평가 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의 범위**에서 우대 또는 감점
 - 주요 가점 사항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1.0%),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1.5%),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1.0%)
- 사업비 계상기준 검토(공고문 별첨)
 - 정부출연금 비율(총 사업비의 75%이내), 인건비 비율, 간접비 비율 등 **충족 여부** 필수 확인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 사업비 계상기준 검토양식 (단위 : 천원)														
구분/기업명	정부 출연금(A)	사업비 총합				직접비	간접비				노조비			
		총액 (B)	인건비 (C)	간접비 (D)	총사업비 (E=A+B)		총액 (F)	인건비 (G)	간접비 (H)	총액 (I=F+G+H)	총액 (J)	인건비 (K)	간접비 (L)	총액 (M=J+K+L)
합계	300,000	100,000	10,000	90,000	400,000	314,000	77,421	10,000	67,421	381,421	112,680	101,400	11,280	225,360

- 정부지원금은 지원사업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 지원금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국방벤처 지원사업 (7/7)

☐ 자주 하는 질문

Q. 현재 국방벤처협약기업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방벤처 기업은 현재 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했거나, 협약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지원협약 이후 국방벤처센터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Q. 국방분야에 소요가 확정된 제품(기술)개발만 지원 가능한가요?

A. 국방분야에 소요가 확정되지 않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개발하고자하는 제품(기술)이 현재 운용중이거나 개발중인 군수품에 적용가능한 제품(기술)이거나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기술)이어야 합니다.

Q.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도 개발과제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전력지원체계에 적용가능한 제품(기술)은 개발 과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Q. 과제 선정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A. 접수 후 서면평가-현장점검-대면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합니다.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1/5)

☐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사업이란?

-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벤처기업을 국방 분야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방산 연계 실전 사업화 및 방산지원사업 참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 * 단, 창업 7년 이내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 지원사항
 -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비 지원 등 사업화 지원
 - 기업 진단과 전담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 전담 멘토 및 맞춤형 방산교육,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기술지원
 - 체계기업 연계 및 파트너십 형성 지원
 - 청 연구개발 및 수출 지원사업 참여 지원
 - 해외 네트워킹, 투자유치,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지원규모/지원기간 : 2억원 / 1년
 - * 기업당 최대 1억원 정부지원, 총 소요비용의 75%
- 지원방법 : 이메일 제출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2/5)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에 따른 벤처기업
- 창업 7년 이내 국방분야 참여경험이 없는 기업
※ 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신청기한 및 방법

- 주관기업 신청 : 2월 예정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venture@krit.re.kr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참여제한

-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기간 중인 경우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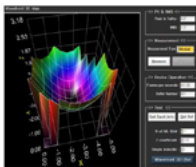
주요 성과

병사훈련용 확장현실(XR)훈련 시뮬레이션 개발



- 개발업체 : 뉴작
- 기술지원 주요 내용
 - 1인 및 다자간 훈련 시나리오 개념 검토
 - 훈련시나리오에 대한 가상현실 연계방안
 - 시뮬레이터를 통한 사격훈련 효과성 및 활용성 검토 지원
- 지원성과
 - 국방벤처 협약업체 선정으로 지속적인 국방분야 기업 육성 추진
 - 지자체 개발비 지원사업 선정을 통한 후속사업 추진
 - 미국 비온드메타버스와 업무협약(MOU) 체결

면대상체 기반 파면가지기 시제품 개발



- 개발업체 : 레오스 광학전자 시스템
- 기술지원 주요 내용
 - 핵심기술(면대상체기반 파면감지) 시각적 구현 가능한 시제품 제작 방안
 - 최종 산출물에 대한 시험 구성체계 개념
- 지원성과
 - 국방벤처 협약업체 선정으로 지속적인 국방분야 기업 육성 추진
 - 국내 전시회 참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발품 홍보 추진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4/5)

'24년 추진 계획

주요 사항

- '24년 신규 과제 예산 : 2억원 (2개 과제 선정예정)
- 추진 중점
 - 국방분야 첨단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신산업 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초기 창업단계 방산 진입 지원

추진 일정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5/5)

자주 하는 질문

Q. 국방분야에 처음인 기업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국방분야에 처음이더라도 국방분야 진출을 위해 시제품 전시회, 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창업한지 9년된 중소기업입니다. 이 경우, 인큐베이팅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창업 7년이내의 중소기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의 기업일 경우 창업 10년 이내의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국방벤처 지원사업과 같이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전력지원체계에 적용가능한 제품(기술)은 개발 과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1/6)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이란?

-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사업개요

- 대상업체 : 중소기업
- 지원대상(내용) : 무기체계 적용 및 수출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연구개발 지원, 개발 성공 후 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개척비 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년, 30억원 (총 사업비의 75% 내, 시장개척비 포함)
- 지원방법 : 공고 기간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담당부서(방산사업총괄팀)에 신청서 제출
* 주요기관(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진흥회 등) 홈페이지 사업 공고 게시
- 공모형태 : 자유공모
- 기타 사항 : 1. 매출 발생 시 기술료 납부
2. 5년간 매년 개발 결과 활용실적 제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2/6)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이거나,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

☐ 신청기한 및 방법

- 주관기업 신청 : (자유공모) 4월 공고 예정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과제수행계획서), 자격 기준 증빙서류 등 필수제출서류

☐ 참여제한

-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등
※ 세부 내용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1조 및 사업공고시 공고문 참조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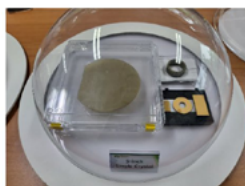
☐ 주요 성과

열영상 대구경 도트사이트



- 개발비/기간 : 16.8억원(정부지원금 12억원) / 2015. 08. ~ 2018. 08.
- 기능
 - 주간/열상 일체형 탐지 가능(주간 도트 조준경+야간 열영상 조준경)
 - 탄도계산 및 보정을 통한 사격 정밀도 향상(자동 탄도보정 지원 기능)
- 개발 성과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수출/국내매출 등 26.4억원 매출 발생

수중무기체계용 압전단결정 전기-기계 복합 성능평가 및 분석기술 개발



- 개발비/기간 : 25.3억원(정부지원금 19억원) / 2018. 07. ~ 2021. 07.
- 기능
 - 기존 압전세라믹 대비 압전 특성이 우수한 압전단결정을 개발하여 수중음향센서 등의 소형화/경량화/저전력화 등 운용효과 및 효율 증대
- 개발 성과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수출/국내매출 등 50.1억원 매출 발생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4/6)

'24년 추진계획

주요 사항

- '24년 신규 과제 예산 : 63억원 (자유공모 : 8개 선정 예상)
- 추진 중점
 - 기술의 고도성,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기술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과제 성공기업 수출경쟁력 향상 (**수출 가능성이 우수한 과제, 기업 선정 추진**)

추진 일정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5/6)

유의사항

사업 신청 유의사항

- 과제수행계획서를 **하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 부채비율의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 회 운영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 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함(해당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
- 주관기업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금지 원칙**
 -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과제수행계획서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현황 및 신청사유" 작성 필요
 - 평가의견 및 과제수행계획서 보완의견에 따라 참여연구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6/6)

☐ 자주 하는 질문

Q. 수출관련 연계지원제도가 있나요?

- A. 성공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6억 시장개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추가협력을 통해 해외전시회 참가비 등에 대한 실비 지원, 제품 마케팅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중견기업이거나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도 개발과제로 신청가능한가요?

- A. 중견기업 또는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유예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개발기간은 3년 이어야 하나요?

- A. 1년 또는 2년도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1/5)

방산혁신기업 100 사업이란?

-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중소·벤처기업(방산혁신기업)을 선별하여 방사청 및 연구소의 주요 지원사업 및 전용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



사업개요

- 대상업체 :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기타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높은 기술의 개발 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전용 지원사업 예산 380억원 ('24년 기준) 및 타 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
- 지원방법 : 공고 기간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담당부서에 신청서 전자우편 제출

(방산조사분석부 방위산업전략팀 inno@krit.re.kr)

*주요기관(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중 (2월 6일 ~ 3월 22일 까지)



*선정평가 추진 절차에 따라 세부 선정일정 변경가능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2/5)

선정기업 대상 주요 혜택

구분	기술개발(R&D) 지원	맞춤형 지원	기타 지원
선별 지원 ¹⁾	● 방산혁신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기업당 최대 50억원)	● 기업 수요조사 접수 및 지원 (접수현황) - 시험평가 기간(BMT 등)비용 지원 - 국내전시회 참여지원	● 혁신전략로드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험사업 선별진행 중)
공통 지원 ²⁾	● 파일럿 프로젝트 (연 1억)	지원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공통지원 사업화 추진 ● 국방첨단전략 기술분야 대학교 산학연계 프로젝트 (연 0.5~2억)	● 국내 정보교류회 (IPT/군/체계업체) ● 수출지원 - 바이어매칭 - 수출소개자료 작성 지원 ● 방산기술혁신펀드 투자소요조사
기존사업 우대혜택	- 가점 : 방산중소기업컨설팅(2%),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2%) 글로벌 방산강소기업(2%), 부품국산화 개발(1.5%), 유망수출품목 발굴 (2%) - 우선 지원 : 국방벤처지원사업 20% 이내 우선 할당		

※ 선정기간(5년)간 기업의 혁신 성장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별 Full-package 지원 추진

※ 지원 내용 지속 확대 계획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3/5)

☐ 사업의 목적

- 미래 국방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전략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그 발전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촉진

☐ 선정 기준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방에 필요한 기술인지?
 - 제안 기술의 국방 활용 방안, 예상 적용 무기체계 등을 고려
- 제안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인지?
 - 기술자체의 도전성, 혁신성 고려
- 국내 확보가 필요한 기술인지? (수출제한 및 해외 수입의존 기술 등)
 - 해외 의존도, 주요기술 보유국 현황 및 국제 공급망 안정성 고려
- 선정 시, 즉시 제안 아이디어 기술개발 착수가 가능한지?
 - 5개년 성장 전략의 개발계획 및 지원 활용계획 타당성 고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4/5)

☐ 신청을 위한 주요 준비 서류

- 기술역량 증빙서류 및 재무제표(최근 3개년) 등 경영역량 증빙서류
-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5개년 성장전략이 포함된 **"혁신성장 전략서"**

- 해당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인지?
 - 기술 자체의 도전성, 혁신성 고려
- 국내에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지? (수출제한 및 해외 수입의존 기술 등)
 - 해외 의존도, 주요 기술 보유국 현황 및 국제 공급망 안정성 고려
- 선정 시, 즉시 제안 아이디어 기술개발 착수가 가능한지?
 - 5개년 성장 전략의 개발계획 및 지원 활용계획 타당성 고려

〈혁신성장 전략서 구성내용〉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5/5)

자주 하는 질문

Q. 5대 첨단전략산업 분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방에 적용이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타분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방산혁신기업 35개중 6개의 기업이 기타분과로 지원해주신 기업이었습니다.

Q. 신청을 위한 혁신성장전략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하나요?

A. 방산혁신기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혜택기간인 5년간 (24~28) 기업이 제안하신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비전, 목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들과 달리 해당 목표가 반드시 달성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방위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로 작성해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Q. 방산초보기업이 지원하기 너무 어려워요!

A. '23년부터 방산혁신기업 100 사업선정과정에서 사업설명회와 함께 방산 초보기업의 지원을 돕기위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국방과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를 통해 지원에 필요한 혁신성장전략 아이템 발굴을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4.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91 —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1/6)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란?

- 방산 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국산화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인재 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성장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

❖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에서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된 혁신 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통해 방위 및 관련산업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 그리고 군사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된 집합체

☐ 운영 현황

- 경남/창원, 대전, 경북/구미에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운영

구분	경남·창원사업단	대전사업단	경북·구미 사업단
특화분야	시범사업으로 추진	드론 분야 특화	유무인복합체계 특화
사업기간(년)	2020년 ~ 2024년	2022년 ~ 2026년	2023년 ~ 2027년
예산 (천원)	총 490억원 (국비 250억원, 지방비 240억원)	총 490억원 (국비 245억원, 지방비 245억원)	총 499억원 (국비 245억원, 지방비 254억원)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2/6)

☐ '24년 추진계획

개요

- 추진목적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 ① 지역 산업주체 간 상생협력 ② 지역특화 국방 중소·벤처 기업 성장 지원
- ③ 연구 개발 촉진 및 성과를 사업화 ④ 창업(경영) 활성화 혁신지원 생태계 구축

- 추진 방향

- 성과창출 중심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운영 및 사업단 간 협력 강화
- 방산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전략 수립

- 지원내용

- 국방기술 개발, 적용을 위한 시험 인프라 조성 및 운영
- 방산특화개발연구소 운영 및 연구인력 양성, 국방 기술 개발비 지원 등 연구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수출 등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전시회 참여 등 사업화 지원
-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창업기업 역량강화 등 방산 창업지원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3/6)

☐ '24년 추진계획

'24년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 ◉ 경남·창원 지역 중소·벤처기업 대상 방산 소재·부품 개발지원 등 7개 분야 사업 추진(사업비 51.9억원)

구분	지원 인프라 구축			방산중소기업 개발지원			창업
지원 분야	시험장비 구축	방위산업 진흥센터 운영	방산소재 부품연구실	방산소재 부품개발 지원	시험 수수료	수출경영 지원	창업지원
사업비 (백만원)	장비설치	380	1,000	1,539	507	764	1,000

◉ 추진방향

-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분석 및 성과홍보를 통한 지역 내 방산 연구개발 분위기 확산
- 지역 내 방위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방산기업 지원체계 확립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4/6)

☐ '24년 추진계획

'24년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 ◉ 대전지역 드론평화 방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산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소재·부품 개발지원 등 5개 분야 사업 추진(사업비 87.0억원)

구분	지원 인프라 구축	방산중소기업 개발지원			창업
지원 분야	시험장비 구축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드론평화 개발비지원	사업화지원	창업지원
사업비 (백만원)	650	3,250	700	3,000	1,100

◉ 추진방향

- 드론평화 방산 환경 변화, 정부정책을 고려한 사업 추진 및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
- 수행기관, 지자체 등 사업 주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내 방산협력체계 구축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5/6)

☐ '24년 추진계획

'24년 경북·구미방산혁신클러스터

- 유·무인 복합 관련 방산 인프라 구축 및 방산 중소·벤처기업 개발지원 등 7개 분야 사업추진 (사업비 116.3억원)

구분	지원 인프라 구축				방산중소기업 개발지원		창업
지원 분야	연구·시험 능력 확보	방위산업 진흥센터 구축	특화개발 연구소	지역방산 특화 로드맵	유무인 복합 분야 개발비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지원
사업비 (백만원)	3,096	4,000	1,000	40	2,410	480	600

• 추진방향

- 유·무인 복합 분야 지역 내 방산 지원 인프라 구축
- 본격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지원 가속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6/6)

☐ 유의사항

(클러스터사업) 사업 참여 유의사항

- 각 지역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 지원사업참여는 해당 지역 소재 기업만 가능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각 운영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만 참여

☐ 자주 하는 질문

Q. 현재 운영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 계획이 있나요?

A. 2024년 신규지역에 추가 설립 계획은 없으나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특화분야가 지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는 해당 분야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특화분야 방산혁신클러스터는 특화분야에 맞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1/5)

☐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주요 컨설팅 분야

기술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등

경영

- 국내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 원가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방산원가 관리 지원 등

행정

- 방산조달, 계약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지원사업 신청,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등

법률

-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관련 법률 상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2/5)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대상업체 : 중소기업
- 지원대상(내용)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 참여희망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3천만원 (기술분야는 최대 5천만원) / '24년 지원예산 : 5.54억원
- 지원방법 : 공고 기간내 수행기관에 서류 제출
 - * 주요기관(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

주요 변경사항

- 과제 공고 : 단기과제(7일 이내) 연중 수시 모집으로 진행 ('24. 5월 ~ '25. 2월)
 - * 매 분기 별 선정평가를 추진('24. 6월, 8월, 11월, '25. 2월)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 선정평가 진행 예정
- 컨설팅 지원 기준 변경(기업, 컨설턴트 당 1년 1회 → 1년 50일)
 - * 수행년도 기업 횟수 제한에서 일수 제한으로 지원 기준 변경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3/5)

세부 수행 절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4/5)

주요 성과

기업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방산분야 진입 및 적용

컨설팅 수행		국방벤처 지원사업 선정
- 기업명 : ㈜모쓰 - 지원일수 / 기간 : 14일 / 2022. 07. ~ 2022. 12.	수행 내용 : 방산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반 환경 조성 및 기업 보유기술을 활용한 신규 과제 발굴	컨설팅 성과 : 23년 국방벤처 지원사업 선정 (항정용 직경 4미터급 탄소복합재 고정파지 프로펠러 개발 / 2023. 06. ~ 2025. 06. / 4억)
- 기업명 : ㈜신승정밀 - 지원일수 / 기간 : 18일 / 2022. 07. ~ 2022. 12.	수행 내용 : 개발된 CTIS를 전투차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업체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성과 : 23년 국방벤처 지원사업 선정 (유도포탄 비행 안정용 날개 구동 감속기 개발 / 2023. 06. ~ 2025. 06. / 4억)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민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 활성화에 기여

컨설팅 수행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선정
- 기업명 : ㈜인윙텍스 - 지원일수 / 기간 : 15일 / 2023. 08. ~ 2023. 12.	수행 내용 :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방산 분야에 접목 및 신기술 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 교육	컨설팅 성과 : 대전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선정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5/5)

자주 하는 질문

Q. 컨설팅은 어떻게 수행되나요?

A.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기업 방문 또는 방산 체계기업·관련 정부기관(소요군 등)을 방문하는 현장컨설팅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하루 최소 3시간으로 2일간 배분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합니다.

Q. 복수의 컨설턴트와 매칭도 가능한가요?

A. 1 과제당 1인의 컨설턴트 매칭이 원칙이나 컨설팅 과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복수의 희망컨설턴트와 매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수행기관 문의 필수

Q.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소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 - 공지사항에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6.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1/8)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이란?

- 양성기관 및 방산 관련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 세부유형

- **[석·박사]** 계약학과 지원사업
: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및 방산업체 채용약정, 재직자 재교육
- **[대졸미취업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 청년 구직자 대상 전문교육 제공을 통해 **방산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 산학연계를 통해 우수 특성화고 재학생을 **방위산업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 및 방산업체 채용약정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2/8)

☐ 세부유형별 내용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 설치학과 : 국방 첨단전략산업 등 첨단 분야 학과
 - * '22년 국방 우주분야(3개 대학), '23년 국방 무인·로봇 및 AI 분야(2개 대학) 개설
- 참여기업 : 학과 개설분야 실적이 있는 방산 관련 기업
- 지원대상 : 방산 관련 기업 채용예정자 또는 재직자
- 지원내용 : (주관대학) 학과 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내외), (학생) 등록금

구분	등록금 부담비율			비고
	정부지원금	참여학생	참여기업	
채용조건형	100%	0%	0%	-
재교육형	70%	15%	15%	중소기업
	60%	20%	20%	중견기업
	50%	25%	25%	대기업

- 지원규모 : 7.71 억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3/8)

☐ 유형별 세부내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주관기관 : 협회, 학회,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 2개 기관 / 주관기관별 30명 교육
- 참여기업 : 방산업체 또는 방산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 교육생 : 대졸 미취업 청년층(만 34세 이하)
- 지원내용 : 방위산업 전문교육(24주) 지원
 - * (전문교육) 16주 내외, (기업실무교육) 8주 내외
- 지원규모 : 5.36 억원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 참여학교 :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함)
 - * 3개 학교 / 학교당 10명 내외 지원
- 참여기업 : 방산업체 또는 방산 관련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참여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 지원규모 : 2.25억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4/8)

'23년 주요 성과

- 계약학과 지원사업 신규 분야 학위과정 개설 : 국방 무인·로봇 및 AI 분야
 -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 2개 학과 개설로 석·박사 과정 55명 수확

분야	주관대학	참여학생 ('24. 1. 31.기준)
국방 우주 ('22년 선정분야)	세종대학교, 연세대학교, 한밭대학교	총 38명
국방 무인·로봇 및 AI ('23년 선정분야)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 17명



- 방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인원 확대 : 총 65명 선발
 - 대졸 미취업자 대상 교육생 모집시기 조정('23.5월) 및 모집비용 지원(사업비)을 통해 교육인원 확대
- 특성화고 지원사업 참여학교 확대 : 총 2개 고교 선발
 - * ('22년 선정) 동아마이스터고교, ('23년 선정) 부산기계공업고교, 한국과학기술고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5/8)

'23년 주요 성과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120시간 이상) 이수한 인력 채용시 기술료 감면 확대
 - 기술료 감면 대상을 부품국산화 이외 국방벤처지원사업, 방위산업 전문교육 등으로 확대
 - *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평가지 우대 : 1.0%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혁신기술 포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육성사업
 -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 인원이 최근 1년간 평균 3명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주최/주관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일자/장소 : (온라인) '23. 5. 15.~9. 27.
(오프라인) '23. 6. 28.~6. 30./대전컨벤션센터
'23. 9. 20./창원대학교
 - 참여현황 : 참여 2,317명, 참여기업 46社, 정출연 3개 기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6/8)

'24년 추진계획(1/2)

사업별 추진내용

구 분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규모	국방 우주분야주관대학(3곳) *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 국방 무인·로봇 및 AI 주관대학(2곳) * 광운대, 서울과기대	'22년 선정 참여학교(1곳) * 동아대이스트고 '23년 선정 참여학교(2곳) * 부산기계공고, 한국과학기술고	'22년 선정 주관기관(2곳) * 창원대 산학협력단 금오공대 산학협력단
예산('24년)	7.71억 원	5.36억 원	2.25억 원
지원내용	- 방산분야 첨단학과 학위과정 이수 지원 - 등록금 및 학과운영비 지원	- 방산분야 전문교육 과정 운영 지원 - 교육지원금 및 교육수당 지원	- 특성화고 대상 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 -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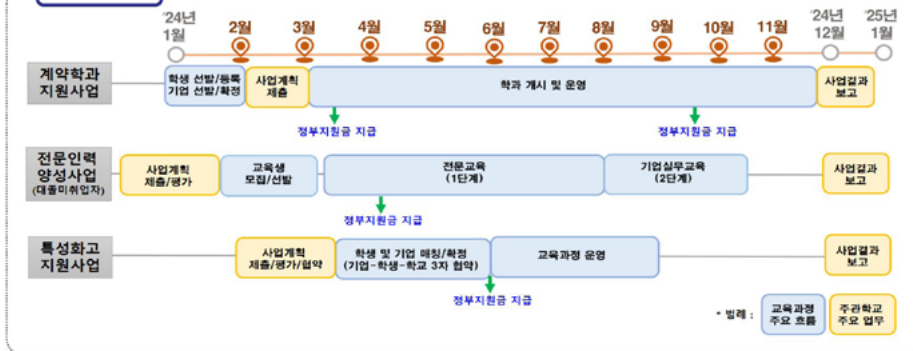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7/8)

'24년 추진계획(2/2)

주요 사항

- (계약학과 지원사업) 국방 무인·로봇 및 AI 분야 봄 학기 개시
-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졸미취업자) 교육과정 조기 개시(3월~)
- [특성화고 교육 지원사업] 기업 및 학생 소요제기시 추가 교육과정 운영

추진 일정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8/8)

☐ 자주 하는 질문

Q. 기업의 의무 채용 근무기간은 있나요?

- A. 의무근무기간이 있습니다.
-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경우는 졸업 후 기업에 입사하여 최소 2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채용조건형 경우 또한 졸업 후 채용약정한 기업에 최소 2년 이상을, 재교육형 경우는 졸업 후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Q.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수업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 A. 참여학생의 유형별로 나뉘집니다.
- 채용조건형은 전일과정이며, 재직자 대상 재교육형은 주말·야간과정으로 수행됩니다.

Q. 올해도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하나요? 기업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 A. 상반기 내 온라인으로 박람회를 시작하여 하반기에 창원 또는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국기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기업의 참가 비용은 별도 없습니다.**
 -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박람회 문의처 : 국기연 담당부서 055-751-4864/4866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사업

3. 수출지원사업





수출지원사업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1/6)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란?

-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내수용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구성품 포함)의 수출용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대상업체 : 대·중견·중소기업
- 대상과제 : 국내 조달·수출 계약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구성품 포함)의 개조개발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5년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 과제를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중 중 소기업 75%, 중견기업 60%, 대기업 50% 지원
※ '21년 3년 100억 → '22년 최장 5년 최대 375억으로 변경
- 공모형태 : 자유공모 + 지정공모('24년 하반기 : 개조개발 기획서 최초 발간 및 기획서 기반 지정공모 예정)
- 지원방법 : 공고 기간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수출사업부 수출개발사업팀에 신청서 제출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진흥회 등 홈페이지 사업 공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2/6)



신청자격

-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수출계약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신청기한 및 방법

- 과제공모 : 연 2회
 - 1차 공고 : 2월~3월
 - 2차 공고 : 5월~6월
 - 3차 공고 : 7월~8월 ※ 잔여 예산 발생 여부에 따라 3차 공고 고려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 접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원본서류 제출)



참여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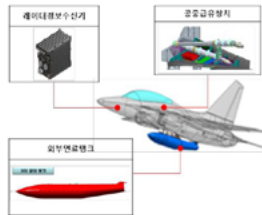
-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세부 내용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1조 참조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3/6)

주요 성과

(FA-50 개조개발 과제) FA-50 경공격기 관련 Probe 방식 공중급유장치 등 3개 과제 지원



- 총 개발비 : 451억 원(정부지원금 291억 원)
- 개발업체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LIG넥스원(주)
- 내용 : 공중급유장치 부착, 외부연료탱크 용량 확장을 통한 항속거리 연장 등
- 개발 성과
 - FA-50 관련 3개 과제를 통해 1,290억 원 수출 성과 달성

(K9, K10 개조개발 과제) K9자주포, K10탄약운반장갑차 관련 주 제어기 등 11개 과제 지원



- 총 개발비 : 89억 원(정부지원금 66억 원)
- 개발업체 : 영풍전자(주), 아이티사이언스(주) 등
- 내용 : 수출국 환경조건 및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개조개발 등
- 개발 성과
 - K9, K10 관련 11개 과제를 통해 272억 원 수출 성과 달성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4/6)

'24년 추진 계획

주요 사항

- '24년 신규 과제 예산 : 535.88억 원
- 추진 중점
 - 수출성과 창출 가능한 우수과제 지원
 - 수출계약이 체결된 개조개발 과제 지원 제한(예상)
 - 체계장비에 장착되어 수출되는 과제의 경우 체계업체 참여(권장)
 - 수출성과 확대를 위한 지정공모 병행 추진(자유공모+지정공모)

추진 일정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5/6)

유의사항

(개조개발) 사업 신청 유의사항

-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선정기준
 - 지원과제 선정기준(1개 이상)과 주관기업 선정기준(1개 이상)을 **각각**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 지원과제 선정기준 : 운영규정 제28조(지원과제 선정기준) 제1항제1~3호(조달, 수출, 개발(진행포함) 실적 무기체계)
 - ※ 주관기업 선정기준 : 운영규정 제29조(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제1항제1~4호(계약, 수출, 개발 참여업체)
 -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 목표성능 : “개조개발 대상(개조 전)”과 “개조개발 적용 무기체계(개조 후)” 명확히 구분
 - ※ K1전차의 변속기를 개조하여 K9자주포에 적용하는 경우 : 개조개발 대상 (K1전차 **변속기**) - 개조개발 품목 적용 무기체계 (K9자주포)
 - 수출추진 증빙서류 : “기 수출실적”과 개조개발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수출추진” 증빙서류를 명확히 구분
 - ※ 증빙자료 첨부 시 서류명, 날짜, 당사자, 수출대상국 요구내용 등 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필요(객관적 평가를 위한)
 - 시험평가 계획 : 명확한 시험평가 기준 제시 필요하며 체계적합성 시험 미 수행 시 해당 사유 기재
 - ※ 목표성능 달성 여부 평가를 위한 시험평가 항목 및 적용 규격(MIL-STD, KDS 등) 명시 필요
 - 과제수행계획서 등 제출 시 공고 시 게재되는 업데이트 된 양식 및 제출기한 준수
 - ※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관련 사업부서(수출개발사업팀) 컨설팅 지원(적극활용 권장)
- 수출계약이 체결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제한이 예상되므로 공고 후 사업설명회 참석 요망
 - 수출계약 유형, 시기별 지원 대상 여부 등 정책연구 및 방사청과 협의하여 규정 개정 예정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6/6)

자주 하는 질문

Q. 연구개발 중이거나 완료된 무기체계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정부주도의 연구개발과제 외에 **업체 단독** 또는 민관합동으로 투자·개발중인 연구개발과제 역시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 개조개발 신청업체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체계업체와의 무기체계 조달계약 실적도 인정되나요?

- A. 방사청, 각 군(육 해 공) 등 정부기관과의 계약 뿐만 아니라 **체계업체와의 하도급** 조달계약 실적도 인정됩니다.

Q. 개조개발 지원대상은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 구성품인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무기체계 분류(소분류)에 명시되지 않아 무기체계인지 전력지원체계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 A. 시뮬레이터, 훈련장비, 조준경 등 규정의 분류표만으로 구분이 어려운 품목이 있습니다. 합참(국방부) 문의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시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



2.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1/7)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이란?

-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사업개요

- 대상업체 : 중소기업
- 지원대상 :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2024년 지원규모 13.3억원
(해외바이어발굴)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설명회 개최 등 수출 마케팅 활동 등 지원
(해외인증/수출컨설팅/해외 성능시험) 과제당 최대 3천만원 (총 사업비의 70% 내)
- 지원방법 : 공고 기간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담당부서에 이메일 제출
(방산수출사업부 수출지원팀)
- 기타 사항 : 사업 성공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실적 제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2/7)

☐ 유형별 세부내용

해외바이어발굴



- 해외 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설명회 개최,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진출기반 및 바이어 발굴 전략세미나 개최 등

수출컨설팅



- ▶ 협력업체 등록 절차 및 진입전략, 계약 지원 등 컨설팅 지원
- ✓ 해외정보(시장, 경쟁제품 동향, 파트너/바이어 실태 등) 조사, 마케팅 전략 수립, 계약/법을 문서 지원 등 수출 실무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3/7)

☐ 유형별 세부내용

해외인증획득



- ▶ 글로벌 방산기업이 요구하는 규격 및 인증 획득 지원
- ✓ 방산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획득 지원
- ✓ 인증획득 비용, 컨설팅, 공장심사 등 지용 지원

해외 성능시험



- ▶ 해외에서 진행되는 성능시험(Demo) 지원
- ✓ 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른 해외성능시험(Demo) 지원
- ✓ 운송비, 보험료, 시험을 위한 유류비·탄약비, 장소사용료 등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7)



신청자격

-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참조



신청기한 및 방법

- 기업 모집 : 연중 수시
- 참여기업 신청
(해외바이어발굴) 행사별 공고문 참조
(해외인증/수출컨설팅/해외 성능시험) 1차 모집공고(2 ~ 3월), 2차 모집공고(6월 예정)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공고 기간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담당부서(수출지원팀)에 이메일 제출
※ 공고문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참여제한

-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세부 내용은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참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5/7)



주요 성과

(해외바이어발굴) 권역별 방산협력의 날, 수출상담회 개최 등



- 해외 국방 조달기관 및 국영기업 초청 방산협력의 날 개최 3회 진행
- 미국 FCT팀 대상 G2B행사,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의 날 행사 개최 등
- 국내외전시회 등 연계 수출상담회 4회 진행
- [국외] AUSA(미국 육군전시회), [국내] ADEX(서울에어쇼) 등 연계 수출상담회 진행
- 130개 해외정부-업체 발굴, 116개 중소기업 지원, 총 328건 1:1 상담 지원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 및 수출성과 NDA·MOU 등 11건 체결 달성

(해외인증/수출컨설팅/해외 성능시험) 해외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등



- (해외인증획득) 신호분배기 MIL-STD-810H 등 시험
- 총비용/기간 : 33백만원 / 12개월
- 성과 : 이스라엘/미국 방산업체 대상 납품 및 수출 원료(약 2천억원)
- (수출컨설팅) 미국 방산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컨설팅
- 총비용/기간 : 43백만원 / 9개월
- 성과 : 국내외전시회(AUSA, ADEX) 등에서 해외방산업체와 상담 및 계약 논의(약 6억원)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6/7)

'24년 추진 계획

주요 사항

- '24년 지원규모 : 13.3억원 (해외바이어발굴 6회, 해외인증/수출컨설팅/해외 성능시험 8건 선정 예상)
※ 해외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추진 일정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7/7)

자주 하는 질문

Q. 방산분야에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A. 방산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
방산업체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 연구개발 또는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력업체 등을 의미합니다.

Q. 지원내용 중 해외바이어발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 A.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주관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설명회, 해외진출기반 구축 세미나 등에 참석하시어 해외 정부관계자,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1:1 수출상담,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해외 행사 참여시 발생하는 체재비용(숙박비, 교통비 등)은 지원 불가

Q. 중소기업의 방산수출을 위한 사업정보 및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공지사항에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등 방산수출 지원사업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린정보마당(dtims.krit.re.kr)-기술정책/동향-국방분야 정기 간행물에서 국가별 국방 조달시장 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해외국방조달시장 가이드북'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품목 DB'엑셀파일을 export02@krit.re.kr로 보내주시면, 국내기업별 수출성사 가능성이 높은 해외정부·업체 간 B2B 매칭지원, 방산수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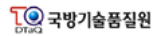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사업

4. 소프트웨어 신뢰성분석도구 무상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신뢰성분석도구 무상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신뢰성분석도구 무상 지원사업 (기품원)

- ◆ 무기체계 SW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 ◆ 무기체계 SW 개발 기반 조성
- ◆ 중소기업의 무기체계 SW 개발 참여 확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827호(2023. 12. 11. 개정)

☑ SW 지원실 운영을 통한 SW 분석도구 2종 무상 지원

- 지원 내용 : 정적시험 도구 1종,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석도구 1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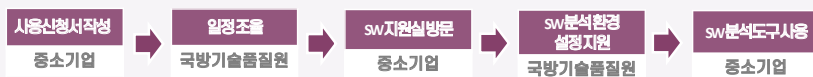
SW 분석도구	점검 항목	내 용
정적시험 도구 1종	코딩규칙	방위사업청 코딩규칙, MISRA-C/MISRA-C++ 등
	취약점	CWE-658(C언어) / CWE-659(C++) / CWE-660(Java) 등
	소스코드 매트릭	소스코드 복잡도 및 제한값 확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석도구 1종	공개 SW 사용 여부	공개 SW 사용방법 준수 확인

- 지원 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내 'SW 지원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 70 (상서동) 국방신뢰성연구센터

☒ SW 지원실 운영을 통한 SW 분석도구 2종 무상 지원

- #### ■ 사용 신청 및 지원 절차



- **사용 신청서 작성**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기품원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양식 및 메일주소는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과제 2]

(회) ○ ○ 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45	Fax	02-1234-5678
전화	02-1234-5678	팩스	02-9876-5432
이름	김민준 (男, 30세, 서울대)		
직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1. 고객님과의 첫 만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 영업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셨습니까? (예: 고객 니즈, 경쟁사 분석, 예산 등)

3. 영업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떤 지표를 사용하셨습니까? (예: 매출액, 이익률, 고객 만족도 등)

4. 영업 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필수) 1000자 이상 작성하십시오.

[illegible]

☒ SW 지원실 운영을 통한 SW 분석도구 2종 무상 지원

- #### ■ 사용 신청 및 지원 절차



- 일정 조율 : 사용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 신청업체 우선 접수, 이후 업체간 균등한 사용을 위한 일정 조율

- SW 지원실 방문

- 소스 코드가 탑재된 노트북 지참
-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로 70 (상서동)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내 SW지원실

- SW 분석환경 설정 지원

- 노트북과 SW 분석도구 설치 PC를 LAN으로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연결
- 중소기업 담당자 ID 부여, ID 권한 설정
- SW 분석도구 연결 시 필요한 초기 설정 지원

- SW 분석도구 사용

- SW분석도구 사용 중 발생하는 에러 해결 지원
- SW 분석도구 배포 사의 기술지원



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사업

5.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사업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 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사업**

2024. 02. 19.(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Korea Foundation for Cooperation of Large&Small Business, Rural Affairs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목 차

01 대·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소개

02 상생협력기금 소개

03 상생협력기금 등 주요사업

➤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01 대·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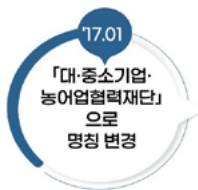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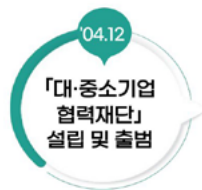
1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기관 소개

대·중소기업, 농어업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양극화 해소 등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인원 총 198명

예산 '23년 5,490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운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정책 및 지원사업 운영
납품대금연동제 운영
중소기업기술보호 전담 운영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도출 및 공표
민간부문 동반성장 문화확산 운영

2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0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소개

- 개념 및 출연혜택, 출연현황

- 검토사항 및 기금활용사업

1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개 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출연대상
내국법인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지원 불가

사용용도
대·중소기업 간의 성과의 공평한 배분,
기술협력, 인력교류, 임금격차 완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 「상생협력법」 제20조의5제5항 및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

4

119 —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출연혜택

세제혜택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

협력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총 출연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투자, 임금증가 등의 공제항목에 해당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만 적용

평가반영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반영

각 사업별 지표에 따라 배점 상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3점)
창업 기업 지원 (3점)

공공기관평가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계획 추진실적」
평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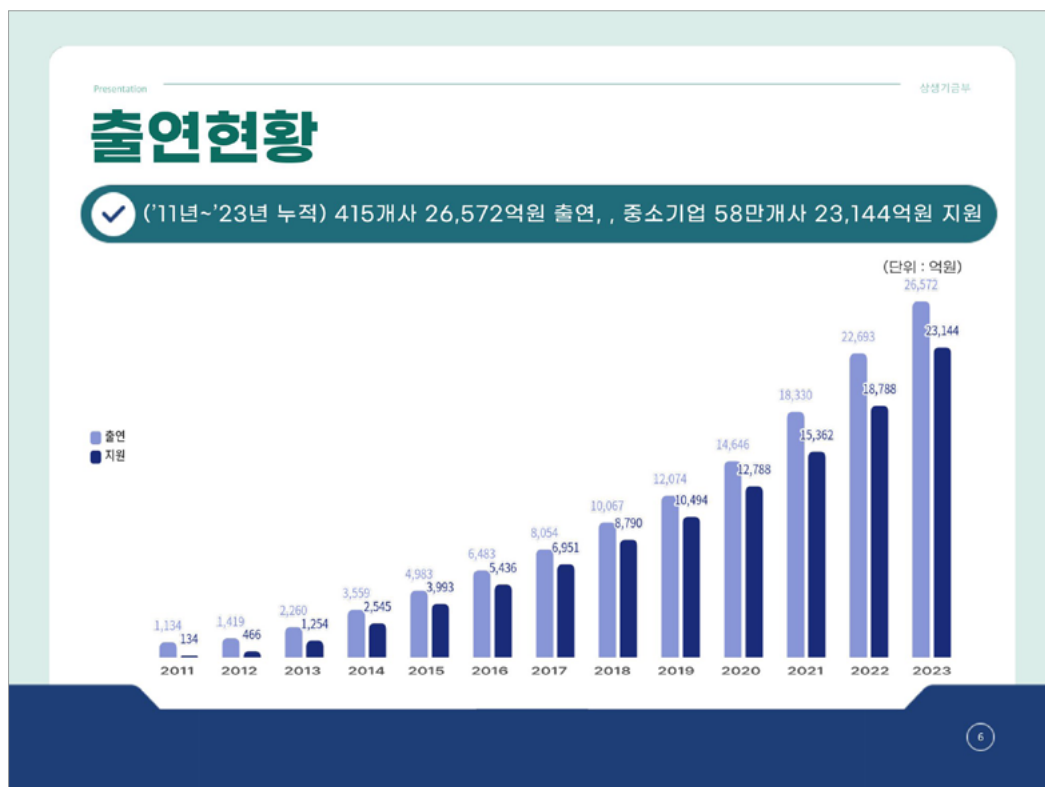
각 사업별 지표에 따라 배점 상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3점)
창업·벤처기업, 분사창업기업 지원 (3점)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

공정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자금지원 중 특별지원에 해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자금출연 실적 인정

5



검토사항

▶ (1단계) 기금 사용용도 확인

- 상생협력기금 지원 내용
 - 상생법 제20조의5 제5항 및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용도 해당 여부
- 지원 대상의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 불가)

(2단계) 특수관계인 확인

- 특수관계인 지원 대상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은 지원 불가
 - 상생협력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체크리스트

구분	검토사항	예	아니오
지원내용	① 지원비용이 상생협력자금 사용률도에 해당하는가?	☐	☐
	② 지원할목이 법 또는 계약에 의한 출연인/직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있는가?	☐	☐
	③ 지원기업 지원비용에 대하여 매출로 계상하지 않는가?	☐	☐
	④ 지원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가?	☐	☐
지원대상	⑤ 지원기업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가?	☐	☐
	⑥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가?	☐	☐
수행기간	⑦ 계절성 등 특수관계인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정상 가격으로 책정했는가?	☐	☐
공동R&D	⑧ 용역계약이 아닌 시제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	☐
	⑨ 발생한 성과물(시제품, 자사생산된 물건)이 지원기업에 귀속되는가?	☐	☐

*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00조의32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출연기업에게 있습니다.

7

기금 활용사업

민간자율 기획사업

민간자율추진사업
(민간100%)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위 부여

창업벤처등
민간자율추진사업
(2017.10.01~)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 시행지원
(민간100%)

협력사 ESG 자원사업

ESG 진단, 교육, 현장실사 등
(민간100%)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지역사회 경쟁력 제고
(민간100%)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해외판로개척
(민간30% 정부70%)

구매조건부 공동R&D

R&D 지원
(미간50% 정부50%)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50~70% 정보 30~50%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협력사 혁신활동 지원
(민간 70%, 정부 30%)

8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03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등 주요사업

- 민간자율 기획사업
- 상생형 창업·벤처지원사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
- 상생협력기금 연계 지원사업
- 기금 외 상생협력지원 사업

9

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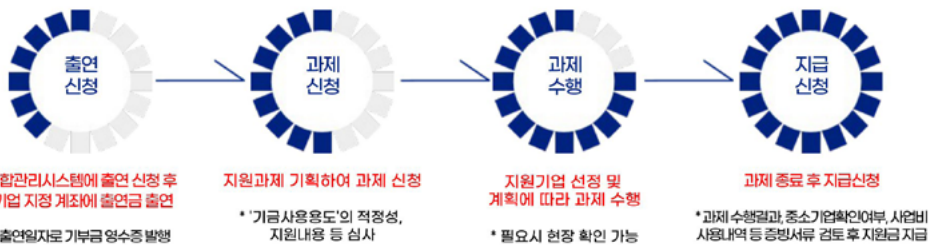
상생기금부

민간자율 기획사업

상생협력기금 사용용도에 따른 지원을 위해
출연기업이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하여
협력재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추진절차

*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fund.win-win.or.kr)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0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스마트안전장비 지원

- 목적: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원천 차단
- 내용: 스마트 안전 장구류 지급(헬멧, 비콘 등)
- 효과: 안전장구류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중대 재해 발생 사전 예방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 목적: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직접 지원 및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에 능동적 대응
- 내용: 기술 임치 수수료 지원
- 효과: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기술 경쟁력 유도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목적: 우수 중소기업 상품 홍보 및 해외 판로 개척
- 내용: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부스비, 통역비, 출장비 등)
- 효과: B2B 상담 기회 제공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성장 기회 창출

장학금 지원

- 목적: 중소기업 복지 향상 및 가족 친화 문화 조성
- 내용: 협력사 임직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 (초,중,고,대학생)
- 효과: 협력사 임직원 복지 개선 및 생활 안정화 지원

13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내국법인이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자율 추진사업

추진체계

출연기업

• 출연/사업기획

전담기관
(합력재단)

• 사업출발·심사
• 주관기관 관리
• 사업성과 관리

주관기관
(외부재단)

• 지원기업 모집·평가
• 프로그램 운영·관리
• 정산 및 성과보고

지원기업
(창업·벤처)

• 프로그램 수행·보고

14

15

16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지원방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지원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을 연계하여 중대재해 감축 및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설비개선 자금 지원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사업명	안전동행 지원사업 중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노후·위험공장개선 등 설비·시설 개선비용지원
지원대상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기준에 부합하는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청방법	출연기업이 컨소시엄(수행기관, 지원기업)을 구성해 직접 신청
매칭지원	정부재원 : 320억원(40%) + 출연기업 320억원(40%) + 지원기업 160억원(20%)

17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 지원



지원 제한 품목

(임·출고, 검사, 부대공정 등 제외)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운반기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 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보조용품 및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자기계기구 및 수공구
- 비육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방음공사, 환기장치공사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개선 등

추진절차



18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상생협력기금
연계 지원사업**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성과공유제

- 개요 : 수위탁기업 간 사전에 약속된 공동 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계약 모델 (법률근거, 상생협력법 제8조)
- 대상 :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
- 요건 : 1) 협력활동 목표합의, 2) 사전계약 체결, 3) 성과공유효과
- 공유 : 현금성 유형 2개(1. 현금배분, 2.물량/매출확대)
- 절차 : 성과공유 과제의 등록 -> 확인 2단계 절차로 운영(연중상시)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02-368-8793, 8944

19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개요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해외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 대상 : 주관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컨소시엄 과제
- 유형 : 1) 산업재 : 인프라 및 플랫폼 활용, 해외법인설립지원, 공동수주 및 기술수출, 전시회, 상담회
2) 소비재 : K팝콘서트연계 판촉전/수출상담, K-콘텐츠 연계 PPL, 해외유통망 연계 판매
- 지원 : 총 과제비의 정부60%, 민간부담 40% (상생협력기금활용시 정부지원 최대 70%)
- 사례 : LIG넥스원/중소기업9개사 ADEX2023 전시회 임차 및 설치 지원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86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 개요 : 주관기관(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중소/중견기업 및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와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비용 지원 (분담비율 : 정부 최대 30%, 주관기관(상생기금) 30% 이상, 중소/중견기업 40% 이내)
- 기간 : 컨소시엄별 최대 12개월
- 현물 : 주관기관이 상생협력기금+현물출자 시 동일규모의 정부지원금 매칭 가능 (예: 주관기관 상생기금 100억원, 현물/인건비 20억원 = 정부지원금 120억원 매칭)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혁신성장지원부 02-368-8747

20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보호 자문
컨설팅 지원

추진절차

* 중소기업 기술보호올타리(www.ultari.go.kr)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1

Presentation

상생기금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

추진절차

* 중소기업 기술자료임치제도(www.kescrow.or.kr) 홈페이지 또는 02-368-8484로 신청 및 문의 가능합니다.

- 이용: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
- 대상: 1) 기술상정보: 제조/생산방법, 설계도, 매뉴얼, 비율/성분표, 연구개발보고서, 소스코드 등
2) 경영상정보: 재무/회계/인사/노무/생산 등 기밀서류, 원가/거래처/매뉴얼 등 기밀서류
- 비용: 건당 신규 30만원(1년)/갱신 15만원
- (1/3 감면)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 기업
- (1/2 감면) 5년 이상 신규/갱신계약 체결기업
- (전액감면) 아이디어임치, 다견임치
- 효과: 기술유출 등 문제발생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활용, 사용인의 기술탈취/유용방지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441

22

